「행정절차법」

- **국 가 · 지 역**: 대만
- **제 정 일**: 1999년 1월 15일
- **개 정 일**: 2015년 12월 11일
- **공 포 일**: 2015년 12월 30일
- **시 행 일**: 2015년 12월 30일

원문[1]	번역문
第一章 總則	**제1장 총칙**
第一節 法例	**제1절 법률의 적용**
第一條（立法目的） 為使行政行為遵循公正、公開與民主之程序，確保依法行政之原則，以保障人民權益，提高行政效能，增進人民對行政之信賴，特制定本法。	**제1조**（입법 목적） 행정행위가 공정·공개 및 민주의 절차를 준수하도록 법에 따른 행정 원칙을 확보하고 인민의 권익을 보장함으로써 행정 효율을 높이고 인민에 대한 행정 신뢰를

[1] 대만에서는 「중앙법규표준법」 제8조에 따라 법령의 본칙을 조(條)·항(項)·관(款)·목(目)으로 구분한다.

	증진하기 위하여 이 법을 특별히 제정한다.
第二條（行政程序與行政機關之定義）	**제2조**（행정절차와 행정기관의 정의）
本法所稱行政程序，係指行政機關作成行政處分、締結行政契約、訂定法規命令與行政規則、確定行政計畫、實施行政指導及處理陳情等行為之程序。	이 법에서 행정절차란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행정기관이 체결하는 행정계약·행정기관이 정하는 법규명령과 행정규칙·행정기관이 수립하는 행정계획·행정기관이 하는 행정지도·행정기관이 처리하는 진정 등에 대한 절차를 말한다.
本法所稱行政機關，係指代表國家、地方自治團體或其他行政主體表示意思，從事公共事務，具有單獨法定地位之組織。	이 법에서 행정기관이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밖의 행정주체를 대표하여 의사를 표시하고 공공의 사무에 종사하며 단독으로 법적 지위를 가지는 조직을 말한다.
受託行使公權力之個人或團體，於委託範圍內，視為行政機關。	권한을 위임받아 공권력을 행사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위탁받은 범위 안에서 행정기관으로 간주한다.

第三條（適用範圍） 行政機關為行政行為時，除法律另有規定外，應依本法規定為之。 下列機關之行政行為，不適用本法之程序規定： 一、各級民意機關。 二、司法機關。 三、監察機關。 下列事項，不適用本法之程序規定： 一、有關外交行為、軍事行為或國家安全保障事項之行為。 二、外國人出、入境、難民認定及國籍變更之行為。 三、刑事案件犯罪偵查程序。 四、犯罪矯正機關或其他收容處所為達成收容目的所為之行為。 五、有關私權爭執之行政裁決	**제3조**（적용 범위） 행정기관은 행정행위를 하는 때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이 법은 다음 각 관의 기관이 하는 행정행위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각급 의회기관 2. 사법기관 3. 감찰기관 이 법은 다음 각 관의 사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외교·국방·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출입국·난민인정·국적변경에 관한 사항 3. 형사(刑事) 범죄 조사 절차에 따른 사항 4. 교정시설(矯正施設) 및 그 밖의 수용소가 수용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사항 5. 민간 분쟁에 관한 행정심판의

程序。 六、學校或其他教育機構為達成教育目的之內部程序。 七、對公務員所為之人事行政行為。 八、考試院有關考選命題及評分之行為。	재결 절차에 따른 사항 6. 학교 또는 그 밖의 교육기관이 교육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행하는 내부 절차에 관한 사항 7. 공무원 인사행정에 관하여 행하는 사항 8. 중화민국 고시원(考試院)이 공무원 채용시험 실시·선발·승진·평가를 위하여 행하는 사항
第四條（一般法律原則） 行政行為應受法律及一般法律原則之拘束。	**제4조**（법률상 일반원칙） 행정행위는 법률 및 법률상 일반원칙에 따라 제한된다.
第五條（行政行為之內容） 行政行為之內容應明確。	**제5조**（행정행위의 내용） 행정행위의 내용은 명확하여야 한다.
第六條（行政行為之平等原則） 行政行為，非有正當理由，不得為差別待遇。	**제6조**（행정행위의 평등원칙） 행정행위는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七條（行政行為之比例原則） 行政行為，應依下列原則為之： 一、採取之方法應有助於目的之達成。 二、有多種同樣能達成目的之方法時，應選擇對人民權益損害最少者。 三、採取之方法所造成之損害不得與欲達成目的之利益顯失均衡。	**제7조**（행정행위의 비례원칙） 행정행위는 다음 각 관의 원칙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채택된 방법은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2.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같은 기능을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있는 경우 인민의 권익에 끼치는 손해가 최소인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3. 행정목적이 달성하고자 하는 이익을 채택된 방법이 조성하는 손해와 동등하게 여겨서는 아니 된다.
第八條（行政行為之誠信原則） 行政行為，應以誠實信用之方法為之，並應保護人民正當合理之信賴。	**제8조**（행정행위의 신의성실원칙） 행정행위는 신의(信義)에 따라 성실히 하여야 하고 인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지켜야 한다.
第九條（行政程序對當事人有利及不利之情形）	**제9조**（행정절차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인 경우）

行政機關就該管行政程序，應於當事人有利及不利之情形，一律注意。	행정기관은 행정절차가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상황을 모두 고려하여 행정을 처리하여야 한다.
第十條（行政裁量之界限） 行政機關行使裁量權，不得逾越法定之裁量範圍，並應符合法規授權之目的。	**제10조**（행정재량의 한계） 행정기관이 행사하는 재량권은 법으로 정하여진 재량범위를 넘어서는 아니 되며 법규를 통하여 해당 행정기관에 권한을 부여한 목적에도 부합하여야 한다.
第二節 管轄	**제2절 관할**
第十一條（行政機關之管轄權及管轄權不得隨意設定或變更） 行政機關之管轄權，依其組織法規或其他行政法規定之。	**제11조**（행정기관의 관할권, 관할권의 임의설정 및 변경 불가） 행정기관의 관할권은 해당 기관의 조직을 정하는 법규 또는 그 밖의 행정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行政機關之組織法規變更管轄權之規定，而相關行政法規所定管轄機關尚未一併修正時，原管轄機關得會同組織法規變更後之管轄機關公告或逕由其共同上級	해당 기관의 조직을 정하는 법규의 개정으로 행정기관의 관할권이 변경되었으나 관할기관을 정하는 행정법규가 이와 동일하게 개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현행 관할

機關公告變更管轄之事項。	기관이 조직을 정한 법규를 변경하는 회의를 한 뒤에 관할기관을 공고하거나 공동의 상급기관을 통하여 관할에 관한 사항의 변경을 공고할 수 있다.
行政機關經裁併者，前項公告得僅由組織法規變更後之管轄機關為之。	행정기관이 병합하는 경우 기관의 조직을 정하는 법규를 변경한 뒤에 통합된 관할기관만이 앞 항에 따라 공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前二項公告事項，自公告之日起算至第三日起發生移轉管轄權之效力。但公告特定有生效日期者，依其規定。	앞의 두 항의 공고 사항은 공고한지 제3일이 되는 날부터 관할권이전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공고에서 효력발생일을 특별히 정하는 경우 해당 규정에 따른다.
管轄權非依法規不得設定或變更。	관할권은 법규에 따르지 아니하고 설정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
第十二條（管轄權之補充規定）	**제12조**（권할권에 대한 보충 규정）
不能依前條第一項定土地管轄權者，依下列各款順序定之：	앞 조 제1항이 정하는 토지관할권에 따를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관의 절차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一、關於不動產之事件，依不動產之所在地。	1. 부동산에 관한 사건은 부동산 소재지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二、關於企業之經營或其他繼續性事業之事件，依經營企業或從事事業之處所，或應經營或應從事之處所。	2. 기업경영 또는 그 밖의 계속성 사업에 관한 사건은 기업경영 또는 사업종사 장소에 따르거나 경영 또는 종사하여야 하는 장소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三、其他事件，關於自然人者，依其住所地，無住所或住所不明者，依其居所地，無居所或居所不明者，依其最後所在地。關於法人或團體者，依其主事務所或會址所在地。	3. 그 밖의 사건이 자연인에 관한 사건인 경우 해당 소재지에 따르며, 주소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거주지에 따르고,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거주지가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가장 최근의 소재지에 따른다. 법인 또는 단체에 관한 사건인 경우 본사 또는 본부의 소재지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四、不能依前三款之規定定其管轄權或有急迫情形者，依事件發生之原因定之。	4. 앞의 세 관의 규정에서 정하는 관할권에 따를 수 없거나 급박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사건 발생의 원인에 따라

	관할권을 정한다.
第十三條（行政機關管轄權競合時之解決方法） 同一事件，數行政機關依前二條之規定均有管轄權者，由受理在先之機關管轄，不能分別受理之先後者，由各該機關協議定之，不能協議或有統一管轄之必要時，由其共同上級機關指定管轄。無共同上級機關時，由各該上級機關協議定之。	**제13조**（행정기관 관할권 경합시 해결방법）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여러 행정기관이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동등하게 관할권을 가지는 경우 해당 사건을 먼저 접수처리하는 기관이 관할하며, 접수처리에 대한 선후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 각 해당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불가능하거나 통합된 관할이 필요한 때에는 공동상급기관의 지정에 따라 관할을 정한다. 공동 상급기관이 없는 때에는 각 해당 상급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前項機關於必要之情形時，應為必要之職務行為，並即通知其他機關。	앞 항의 기관은 필요한 상황인 때에 필요한 직무행위를 하여야 하고 즉시 그 밖의 기관에도 통지하여야 한다.
第十四條（行政機關管轄權爭議之解決方法）	**제14조**（행정기관 간 관할권 다툼에 대한 해결방법）

數行政機關於管轄權有爭議時，由其共同上級機關決定之，無共同上級機關時，由各該上級機關協議定之。	여러 행정기관이 관할권을 다투는 경우에는 해당 행정기관을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기관이 그 관할을 결정하며, 공통으로 감독하는 상급 행정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각 상급 행정기관이 협의하여 그 관할을 결정한다.
前項情形，人民就其依法規申請之事件，得向共同上級機關申請指定管轄，無共同上級機關者，得向各該上級機關之一為之。受理申請之機關應自請求到達之日起十日內決定之。	앞 항의 상황에서 인민이 법규에 따라 신청하는 사건은 공동 상급기관에 관할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동 상급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각 해당 상급기관 가운데 한 기관이 지정할 수 있다. 신청을 접수하는 기관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안에 결정하여야 한다.
在前二項情形未經決定前，如有導致國家或人民難以回復之重大損害之虞時，該管轄權爭議之一方，應依當事人申請或依職權為緊急之臨時處置，並應層報共同上級機關及通知他方。	앞의 두 항의 상황에서 결정 전에 국가나 인민이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한 손해를 입을 것이 우려되는 때에는 해당 관할권 쟁의 당사자 한쪽은 당사자 신청 또는 직권에 따라 임시조치를 긴급하게 취하여야 하며 순차적으로 공동 상급기관에 보고하고 상대방

	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人民對行政機關依本條所為指定管轄之決定，不得聲明不服。	인민은 이 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행정기관의 관할 결정에 대하여 불복해서는 아니 된다.
第十五條（行政機關將其權限委託或委任其他機關）	**제15조**（행정기관이 권한을 그 밖의 기관에 위탁 또는 위임）
行政機關得依法規將其權限之一部分，委任所屬下級機關執行之。	행정기관은 법규에 따라 권한의 일부분을 하급 기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
行政機關因業務上之需要，得依法規將其權限之一部分，委託不相隸屬之行政機關執行之。	행정기관은 업무상 필요한 경우 권한의 일부분을 해당 기관에 예속되지 아니하는 행정기관에게 위탁할 수도 있다.
前二項情形，應將委任或委託事項及法規依據公告之，並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	앞의 두 항의 상황인 경우 위탁이나 위임 관련 사항 및 법규에 따른 공고를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第十六條（行政機關將其權限委託民間或個人處理）	**제16조**（행정기관이 권한을 민간 또는 개인이 처리하도록 위탁하는 경우）
行政機關得依法規將其權限之一部分，委託民間團體或個人辦	행정기관은 법규에 따라 권한의 일부분을 민간단체 또는 개인이

理。 前項情形，應將委託事項及法規依據公告之，並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 第一項委託所需費用，除另有約定外，由行政機關支付之。	처리하도록 위탁할 수 있다. 앞 항의 상황에서 위탁 사항 및 법규에 따른 공고는 정부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제1항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달리 약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지급한다.
第十七條（行政機關對管轄權之有無之處置） 行政機關對事件管轄權之有無，應依職權調查；其認無管轄權者，應即移送有管轄權之機關，並通知當事人。 人民於法定期間內提出申請，依前項規定移送有管轄權之機關者，視同已在法定期間內向有管轄權之機關提出申請。	**제17조**（행정기관의 관할권 유무에 대한 처리） 행정기관의 사건에 대한 관할권 유무는 직권에 따라 조사하여야 한다. 관할이 아님을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즉시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인민이 법정기간 안에 제출하는 신청을 앞 항의 규정에 따라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는 경우 이미 법정기간 안에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신청을 제출한 것과 동일하다고 간주한다.
第十八條（管轄權變更之處理）	**제18조**（관할권 변경에 대한 처

	리)
行政機關因法規或事實之變更而喪失管轄權時，應將案件移送有管轄權之機關，並通知當事人。但經當事人及有管轄權機關之同意，亦得由原管轄權機關繼續處理該案件。	행정기관은 법규 또는 사실에 따라 관할권을 변경하거나 상실하는 때에 사건을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사자 및 관할권이 있는 기관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의 관할기관이 계속하여 해당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第十九條（執行職權時得請求其他機關協助及有不同意見之解決方法）	**제19조**（직권을 집행하는 때에 그 밖의 기관에 협조 또는 의견 불일치에 대한 해결을 요청하는 방법）
行政機關為發揮共同一體之行政機能，應於其權限範圍內互相協助。	행정기관의 통합된 행정기능은 주어진 권한 범위 안에서 상호 협조하여 발휘하여야 한다.
行政機關執行職務時，有下列情形之一者，得向無隸屬關係之其他機關請求協助：	행정기관의 직무 집행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기관에 예속되지 아니하는 다른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一、因法律上之原因，不能獨自	1. 법적인 원인으로 독자적인 직

執行職務者。	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二、因人員、設備不足等事實上之原因，不能獨自執行職務者。	2. 인력·설비 부족 등 사실적인 원인으로 인하여 독자적인 직무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三、執行職務所必要認定之事實，不能獨自調查者。	3. 직무 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지된 사실을 독자적으로 조사할 수 없는 경우
四、執行職務所必要之文書或其他資料，為被請求機關所持有者。	4. 직무 집행에 필요한 문서 또는 그 밖의 자료를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五、由被請求機關協助執行，顯較經濟者。	5.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지원을 받아 집행하여야 비교적 경제적인 경우
六、其他職務上有正當理由須請求協助者。	6. 그 밖의 직무상 정당한 이유로 협조를 요청하여야 하는 경우
前項請求，除緊急情形外，應以書面為之。	긴급한 상황인 경우를 제외하고 앞 항의 요청은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被請求機關於有下列情形之一者，應拒絕之：	요청받은 기관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조를 거부하여야 한다.
一、協助之行為，非其權限範圍	1. 협조 행위가 해당 권한 범위

或依法不得為之者。	가 아니거나 법에 따라 할 수는 없는 경우
二、如提供協助，將嚴重妨害其自身職務之執行者。	2. 협조 제공이 본연의 직무 집행에 심각한 훼방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被請求機關認有正當理由不能協助者，得拒絕之。	요청받은 기관이 정당한 사유로 협조할 수 없다고 인지하는 경우에는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
被請求機關認為無提供行政協助之義務或有拒絕之事由時，應將其理由通知請求協助機關。請求協助機關對此有異議時，由其共同上級機關決定之，無共同上級機關時，由被請求機關之上級機關決定之。	요청받은 기관이 행정적 협조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인지하거나 거부할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협조를 요청한 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협조를 요청한 기관이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동 상급기관이 결정한다. 공동 상급기관이 없는 때에는 요청받은 기관의 상급기관이 결정한다.
被請求機關得向請求協助機關要求負擔行政協助所需費用。其負擔金額及支付方式，由請求協助機關及被請求機關以協議定之；協議不成時，由其共同上級機關定之。	요청받은 기관은 협조를 요청한 기관에게 행정 협조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수 있다. 그 부담 금액 및 지급 방식은 협조를 요청한 기관 및 요청받은 기관이 협의하여 정한다. 협의가 성립하

	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동 상급기관이 결정한다.
第三節 當事人	**제3절 당사자**
第二十條（當事人之範圍） 本法所稱之當事人如下：	**제20조**（당사자의 범위） 이 법에서 말하는 당사자란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다.
一、申請人及申請之相對人。	1. 신청인 및 신청 상대방
二、行政機關所為行政處分之相對人。	2. 행정기관이 한 행정처분의 상대방
三、與行政機關締結行政契約之相對人。	3. 행정기관과 행정계약을 체결한 상대방
四、行政機關實施行政指導之相對人。	4.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행정지도의 상대방
五、對行政機關陳情之人。	5. 행정기관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자
六、其他依本法規定參加行政程序之人。	6. 그 밖에 이 법에서 규정된 행정절차에 참가하는 자
第二十一條（行政程序當事人之範圍） 有行政程序之當事人能力者如下：	**제21조**（행정절차 당사자의 범위）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一、自然人。 二、法人。 三、非法人之團體設有代表人或管理人者。 四、行政機關。 五、其他依法律規定得為權利義務之主體者。	1. 자연인 2. 법인 3. 법인이 아닌 단체가 세운 대표자 또는 관리자 4. 행정기관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권리·의무의 주체라고 규정된 자
第二十二條（得為有效行政程序行為之資格） 有行政程序之行為能力者如下： 一、依民法規定，有行為能力之自然人。 二、法人。 三、非法人之團體由其代表人或管理人為行政程序行為者。 四、行政機關由首長或其代理人、授權之人為行政程序行為者。 五、依其他法律規定者。	**제22조**（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있는 자의 자격）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자는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있는 자가 될 수 있다. 1. 민법에서 행위능력이 있는 자연인으로 규정하는 자 2. 법인 3. 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자로서 행정절차 행위를 하는 자 4. 행정기관의 수장(首長) 또는 대리인이나 권한을 부여받은 자로서 행정절차 행위를 하는 자 5. 그 밖에 다른 법률에서 행위

無行政程序行為能力者，應由其法定代理人代為行政程序行為。 外國人依其本國法律無行政程序之行為能力，而依中華民國法律有行政程序之行為能力者，視為有行政程序之行為能力。	능력이 있다고 규정하는 자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는 행정절차에 따라 법정대리인이 대신하여 행위하여야 한다. 외국인이 자신의 본국법에 따라서는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없지만 중화민국 법률에 따라서는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절차에 대한 행위능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第二十三條（通知參加為當事人） 因程序之進行將影響第三人之權利或法律上利益者，行政機關得依職權或依申請，通知其參加為當事人。	**제23조**（당사자 참가 통지） 행정절차의 진행이 제3자의 권리 또는 법적 이익에 영향을 주는 경우 행정기관은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당사자로 참가할 수 있다.
第二十四條（委任代理） 當事人得委任代理人。但依法規或行政程序之性質不得授權者，不得為之。 每一當事人委任之代理人，不	**제24조**（대리인 선임） 당사자는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다만, 법규 또는 행정절차의 성질에 따라 권한의 위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할 수 없다. 각 당사자 한쪽이 위임하는 대

得逾三人。 代理權之授與，及於該行政程序有關之全部程序行為。但申請之撤回，非受特別授權，不得為之。 行政程序代理人應於最初為行政程序行為時，提出委任書。 代理權授與之撤回，經通知行政機關後，始對行政機關發生效力。 **第二十五條**（單獨代理原則） 代理人有二人以上者，均得單獨代理當事人。 違反前項規定而為委任者，其代理人仍得單獨代理。 代理人經本人同意得委任他人為複代理人。	리인은 세 명을 초과할 수 없다. 대리권의 수여는 해당 행정절차에 관련한 모든 절차행위에 이르는 것이다. 다만, 철회 신청을 하여 특별히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할 수 없다. 행정절차 대리인은 최초로 행정절차 행위를 하는 때에 위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리권 수여에 대한 철회는 행정기관에 통지한 뒤에 행정기관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 **제25조**（동등한 대리의 원칙） 대리인이 2인 이상인 경우 각자 동등하게 당사자를 대리할 수 있다. 앞 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위임하는 경우에도 대리인은 여전히 각자 대리할 수 있다. 대리인은 본인의 동의를 받고 타인이 대리인을 맡도록 재위임할 수 있다.

第二十六條（代理權之效力） 代理權不因本人死亡或其行政程序行為能力喪失而消滅。法定代理有變更或行政機關經裁併或變更者，亦同。	**제26조**（대리권의 효력） 대리권은 본인 사망 또는 해당 행정절차 행위능력 상실로 소멸되지 아니한다. 법정대리의 변경 또는 행정기관 합병이나 변경의 경우에도 동일하다.
第二十七條（當事人之選定或指定） 多數有共同利益之當事人，未共同委任代理人者，得選定其中一人至五人為全體為行政程序行為。 未選定當事人，而行政機關認有礙程序之正常進行者，得定相當期限命其選定；逾期未選定者，得依職權指定之。 經選定或指定為當事人者，非有正當理由不得辭退。	**제27조**（당사자 선정 또는 지정） 다수가 공동이익에 대한 당사자이지만 공동으로 대리인에게 위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가운데 1인에서 5인이 전체를 위하여 행정절차 행위를 할 수 있다. 당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여 행정기관이 절차상 정당한 진행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선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기한을 초과하여도 선정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직권에 따라 지정할 수 있다. 선정 또는 지정을 통하여 당사자를 정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없이 사퇴하여서는 아니 된다.

經選定或指定當事人者，僅得由該當事人為行政程序行為，其他當事人脫離行政程序。但申請之撤回、權利之拋棄或義務之負擔，非經全體有共同利益之人同意，不得為之。	선정 또는 지정을 통하여 당사자를 정하는 경우에는 오직 해당 당사자만이 행정절차 행위를 할 수 있으며 그 밖의 당사자는 행정절차로부터 제외된다. 다만, 철회 신청·권리나 의무 부담의 포기를 통하여 공동이익에 대한 전체 인원이 동의하여야만 제외될 수 있다.
第二十八條（選定或指定當事人單獨行使職權） 選定或指定當事人有二人以上時，均得單獨為全體為行政程序行為。	**제28조**（선정 또는 지정한 당사자의 단독적 직권행사） 선정 또는 지정한 당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동등하게 각각 전체를 위하여 행정절차 행위를 할 수 있다.
第二十九條（選定或指定當事人之更換或增減） 多數有共同利益之當事人於選定或經指定當事人後，仍得更換或增減之。 行政機關對於其指定之當事	**제29조**（선정 또는 지정한 당사자의 교체 또는 증가·감소） 다수가 공동이익의 당사자이며 당사자를 선정 또는 지정한 뒤에도 교체 또는 그 수를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행정기관이 지정한 당사자를 공

人，為共同利益人之權益，必要時，得更換或增減之。	동이익자의 권익을 위하여 필요시 교체 또는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依前二項規定喪失資格者，其他被選定或指定之人得為全體為行政程序行為。	앞의 두 항에서 규정하는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그 밖에 선정 또는 지정된 자가 전체를 위하여 행정절차 행위를 할 수 있다.
第三十條（選定、指定、更換或增減當事人之生效要件）	**제30조**（당사자를 선정·지정·교체 또는 증가·감소 후 효력이 발생하는 요건）
當事人之選定、更換或增減，非以書面通知行政機關不生效力。	당사자의 선정·지정·교체 또는 증가·감소를 서면으로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行政機關指定、更換或增減當事人者，非以書面通知全體有共同利益之當事人，不生效力。但通知顯有困難者，得以公告代之。	행정기관이 당사자의 지정·교체 또는 증가·감소에 대하여 공동이익 당사자 전체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통지가 명백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개별 통지를 공고로 갈음할 수 있다.
第三十一條（輔佐人之規定）	**제31조**（보좌인 규정）

當事人或代理人經行政機關之許可，得偕同輔佐人到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행정기관의 허가를 받아 현장에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行政機關認為必要時，得命當事人或代理人偕同輔佐人到場。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은 현장에 보좌인을 동반할 수 있다.
前二項之輔佐人，行政機關認為不適當時，得撤銷其許可或禁止其陳述。	앞의 두 항에 관련된 상황에서 행정기관이 보좌인이 부적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보좌인 동반 허가를 취소하거나 보좌인의 진술을 금지할 수 있다.
輔佐人所為之陳述，當事人或代理人未立即提出異議者，視為其所自為。	보좌인이 진술하는 바에 대하여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즉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동의한다고 간주한다.
第四節 迴避	**제4절 회피**
第三十二條（公務員應自行迴避的事由）	**제32조**（공무원이 스스로 회피하여야 하는 사유）
公務員在行政程序中，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應自行迴避：	공무원이 행정절차 중 다음 각 관의 상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一、本人或其配偶、前配偶、四親等內之血親或三親等內之	1. 본인 또는 배우자, 전(前) 배우자, 혈족으로 인한 사촌 이

姻親或曾有此關係者為事件之當事人時。	내의 관계자 또는 혼인으로 인한 삼촌 이내의 관계자가 사건의 당사자인 경우
二、本人或其配偶、前配偶，就該事件與當事人有共同權利人或共同義務人之關係者。	2. 본인 또는 배우자, 전(前) 배우자가 해당 사건의 당사자와 공동 권리자 또는 공동 의무자의 관계인인 경우
三、現為或曾為該事件當事人之代理人、輔佐人者。	3. 현재 또는 이전에 해당 사건의 당사자의 대리인 또는 보좌인인 경우
四、於該事件，曾為證人、鑑定人者。	4. 해당 사건에 대한 증인 또는 감정인인 경우
第三十三條（當事人申請公務員迴避之理由及其相關） 公務員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當事人得申請迴避：	**제33조**（당사자가 공무원 회피를 신청하는 사유 및 상관 관계） 공무원이 다음 각 관의 정황 가운데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는 회피 신청을 할 수 있다.
一、有前條所定之情形而不自行迴避者。	1. 앞 조에서 규정하는 정황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二、有具體事實，足認其執行職務有偏頗之虞者。	2. 구체적인 사실이 있어서 직무를 편파적으로 집행할 우려

	가 충분히 있는 경우
前項申請，應舉其原因及事實，向該公務員所屬機關為之，並應為適當之釋明；被申請迴避之公務員，對於該申請得提出意見書。	앞 항의 신청은 그 원인 및 사실에 따라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적절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회피 신청 대상인 공무원은 해당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不服行政機關之駁回決定者，得於五日內提請上級機關覆決，受理機關除有正當理由外，應於十日內為適當之處置。	행정기관의 기각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5일 안에 상급기관에 재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하는 기관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반드시 10일 안에 적절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被申請迴避之公務員在其所屬機關就該申請事件為准許或駁回之決定前，應停止行政程序。但有急迫情形，仍應為必要處置。	회피 신청 대상인 공무원은 소속기관에서 해당 신청 사건이 허가 또는 기각이 결정되기 전에는 행정절차를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상황인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처리한다.
公務員有前條所定情形不自行迴避，而未經當事人申請迴避者，應由該公務員所屬機關依職權命其迴避。	공무원이 앞 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스스로 회피하지 아니하고 당사자도 회피 신청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소속기관이 직권에 따라 회피를 명령

	하여야 한다.
第五節 程序之開始	**제5절 절차의 개시**
第三十四條（行政程序之開始） 行政程序之開始，由行政機關依職權定之。但依本法或其他法規之規定有開始行政程序之義務，或當事人已依法規之規定提出申請者，不在此限。	**제34조**（행정절차의 개시） 행정절차의 개시는 행정기관의 직권으로 정한다. 다만,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에서 행정절차의 개시 의무가 규정된 경우 또는 당사자가 이미 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三十五條（當事人向行政機關提出申請之方式） 當事人依法向行政機關提出申請者，除法規另有規定外，得以書面或言詞為之。以言詞為申請者，受理之行政機關應作成紀錄，經向申請人朗讀或使閱覽，確認其內容無誤後由其簽名或蓋章。	**제35조**（당사자가 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하는 방식） 당사자가 법에 따라 행정기관에 신청을 제출하는 경우 법규에 별도의 규정이 있지 아니하면 서면 또는 구두 방식으로 할 수 있다. 구두 방식으로 신청하는 경우 접수하는 행정기관은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신청자에게 낭독해주거나 신청자가 열람하도록 하고 그 내용에 틀림이 없는지를 확인한 뒤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

	다.
第六節 調查事實及證據	**제6절 조사사실 및 증거**
第三十六條（行政機關應依職權調查證據）	**제36조**（직무 권한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는 행정기관의 의무）
行政機關應依職權調查證據，不受當事人主張之拘束，對當事人有利及不利事項一律注意。	행정기관은 직권에 따라 증거를 조사하여야 하며, 당사자의 주장에 구속받지 아니하고 당사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사항에 대하여 예외없이 주의를 기울인다.
第三十七條（當事人得自行提出證據及向行政機關申請調查）	**제37조**（당사자가 스스로 증거 제출 및 행정기관에 증거 조사 신청 가능）
當事人於行政程序中，除得自行提出證據外，亦得向行政機關申請調查事實及證據。但行政機關認為無調查之必要者，得不為調查，並於第四十三條之理由中敘明之。	당사자는 행정절차 중 스스로 증거를 제출하거나 행정기관에 사실 및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도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조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지하는 경우 제43조의 이유 중 어느 하나로 조사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第三十八條（行政機關調查後得製	**제38조**（행정기관 조사 후 서면

作書面紀錄） 行政機關調查事實及證據，必要時得據實製作書面紀錄。	기록 작성 가능） 행정기관은 사실 및 증거를 조사한 뒤에 필요시 사실에 근거하여 서면 기록을 작성할 수 있다.
第三十九條（行政機關得通知相關之人到場陳述） 行政機關基於調查事實及證據之必要，得以書面通知相關之人陳述意見。通知書中應記載詢問目的、時間、地點、得否委託他人到場及不到場所生之效果。	**제39조**（행정기관은 관계자에게 출석하여 진술하도록 통지 가능） 행정기관은 사실 및 증거 조사에 기초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자에게 의견을 진술하도록 서면 통지할 수 있다. 통지서에는 질의 목적·시간·지점·대리출석 위탁 가능 여부·불출석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과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四十條（行政機關得要求提供文書、資料或物品） 行政機關基於調查事實及證據之必要，得要求當事人或第三人提供必要之文書、資料或物品。	**제40조**（행정기관은 문서·자료·물품 제공 요청 가능） 행정기관은 조사 사실 및 증거의 필요에 기초하여 당사자 또는 제3자에게 문서·자료·물품을 요청할 수 있다.
第四十一條（選定鑑定人） 行政機關得選定適當之人為鑑	**제41조**（감정인 선정） 행정기관은 감정을 위하여 적정

定。 以書面為鑑定者，必要時，得通知鑑定人到場說明。	한 사람을 선정할 수 있다. 감정이 서면으로 된 경우에 필요시 감정인이 출석하여 설명하도록 통지할 수 있다.
第四十二條（行政機關得實施勘驗） 行政機關為瞭解事實真相，得實施勘驗。 勘驗時應通知當事人到場。但不能通知者，不在此限。	**제42조**（행정기관의 검증 조사 실시 권한） 행정기관은 사건 관련 진상을 이해하기 위하여 검증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검증 조사시 당사자에게 출석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第四十三條（行政機關採證之法則） 行政機關為處分或其他行政行為，應斟酌全部陳述與調查事實及證據之結果，依論理及經驗法則判斷事實之真偽，並將其決定及理由告知當事人。	**제43조**（행정기관 증거수집의 법칙） 행정기관은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정행위를 위하여 진술 전부와 사실 및 증거 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논리 및 경험에 따라 사실의 진위를 판단하고 그 결정 및 이유를 당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第七節 資訊公開	**제7절 정보 공개**

第四十四條（刪除） （刪除）	**제44조**（삭제） （삭제）
第四十五條（刪除） （刪除）	**제45조**（삭제） （삭제）
第四十六條（申請閱覽卷宗） 當事人或利害關係人得向行政機關申請閱覽、抄寫、複印或攝影有關資料或卷宗。但以主張或維護其法律上利益有必要者為限。	**제46조**（공문 열람 신청）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행정기관에 관련 자료 및 공문의 열람·필사·복사·촬영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법적 이익을 주장하거나 옹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신청할 수 있다.
行政機關對前項之申請，除有下列情形之一者外，不得拒絕： 一、行政決定前之擬稿或其他準備作業文件。 二、涉及國防、軍事、外交及一般公務機密，依法規規定有保密之必要者。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앞 항의 신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행정결정 이전에 작성된 초안 또는 그 밖에 행정결정 준비과정에서 작성된 문서인 경우 2. 국방·군사·외교·일반공무와 관련된 기밀이며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보호

	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三、涉及個人隱私、職業秘密、營業秘密，依法規規定有保密之必要者。	3. 개인 사생활·직업기밀·영업비밀과 관련되었으며 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비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四、有侵害第三人權利之虞者。	4.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五、有嚴重妨礙有關社會治安、公共安全或其他公共利益之職務正常進行之虞者。	5. 사회치안·공공안전·그 밖의 공공이익 관련 직무의 정상적인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前項第二款及第三款無保密必要之部分，仍應准許閱覽。	앞 항의 제2관 및 제3관에서 비밀보호가 필요하지 아니한 부분은 열람을 허가하여야 한다.
當事人就第一項資料或卷宗內容關於自身之記載有錯誤者，得檢具事實證明，請求相關機關更正。	당사자는 제1항의 자료 또는 공문 내용이 자신이 기재한 바와 다른 경우 사실증명을 서면으로 갖추어 관련 기관에 경정청구(更正請求)를 할 수 있다.
第四十七條（公務員與當事人進行行政程序外之接觸） 公務員在行政程序中，除基於職務上之必要外，不得與當事人	**제47조**（행정절차 진행 외에 공무원과 당사자의 사적 접촉 금지） 공무원은 행정절차 중에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

或代表其利益之人為行政程序外之接觸。 公務員與當事人或代表其利益之人為行政程序外之接觸時，應將所有往來之書面文件附卷，並對其他當事人公開。 前項接觸非以書面為之者，應作成書面紀錄，載明接觸對象、時間、地點及內容。	대표자와 행정절차 외에 접촉하여서는 아니된다. 공무원과 당사자·대표자가 행정절차 외에 접촉하는 경우 서면으로 주고받은 모든 문서를 다른 당사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앞 항에서의 접촉이 서면으로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서면기록을 별도로 작성하여 접촉 대상·시간·지점·내용을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第八節 期日與期間	**제8절 기일과 기간**
第四十八條（期間之計算） 期間以時計算者，即時起算。 期間以日、星期、月或年計算者，其始日不計算在內。但法律規定即日起算者，不在此限。 期間不以星期、月或年之始日起算者，以最後之星期、月或年與起算日相當日之前一日為期間	**제48조**（기간의 계산） 기간을 시간으로 정하는 때에는 즉시로부터 계산한다. 기간을 일·주·월·연으로 정하는 때에는 첫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한다. 다만, 법률에서 그 날부터 기간을 계산하도록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기간을 주·월·연으로 정하여 첫날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계산하는 경우 해당 기간의 마지막 주·

之末日。但以月或年定期間，而於最後之月無相當日者，以其月之末日為期間之末日。	월·연에서 그 기산일에 해당하는 날의 전날을 기간의 종료일로 한다. 다만, 기간을 월·연으로 정하는 때에 마지막 달에 해당일이 없는 경우 그 달의 마지막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期間之末日為星期日、國定假日或其他休息日者，以該日之次日為期間之末日；期間之末日為星期六者，以其次星期一上午為期間末日。	기간의 마지막 날이 일요일·공휴일·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 해당하는 날의 다음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기간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주의 월요일 오전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期間涉及人民之處罰或其他不利行政處分者，其始日不計時刻以一日論；其末日為星期日、國定假日或其他休息日者，照計。但依第二項、第四項規定計算，對人民有利者，不在此限。	인민을 처벌하거나 그 밖에 인민에게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에 관련한 기간의 첫날은 시각에 관계없이 1일로 본다. 마지막 날이 일요일·공휴일·그 밖의 휴무일인 경우 계산대로 그 날에 기간이 끝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2항과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계산이 인민에게 유리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四十九條（郵送期間之扣除） 基於法規之申請，以掛號郵寄方式向行政機關提出者，以交郵當日之郵戳為準。	**제49조**（우편배달 기간의 공제） 법규에 기초한 신청을 등기우편 방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경우 우편으로 부치는 때에 소인으로 표시된 날짜를 신청 제출 기준으로 한다.
第五十條（回復原狀之申請） 因天災或其他不應歸責於申請人之事由，致基於法規之申請不能於法定期間內提出者，得於其原因消滅後十日內，申請回復原狀。如該法定期間少於十日者，於相等之日數內得申請回復原狀。	**제50조**（원상복구 신청）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신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법규에 기초한 신청을 법정기간 안에 제출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그 원인이 소멸한 뒤 10일 안에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있다. 해당 법정기간이 10일보다 짧은 경우 그 법정기간과 같은 일수(日數) 안에 원상복구 신청을 하여야 한다.
申請回復原狀，應同時補行期間內應為之行政程序行為。	원상복구 신청은 신청을 보완하는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는 행정절차상 행위이기도 하다.
遲誤法定期間已逾一年者，不得申請回復原狀。	법정기간이 1년보다 더 늦춰지는 경우 원상복구 신청을 할 수

	없다.
第五十一條（行政機關對人民申請之處理期間） 行政機關對於人民依法規之申請，除法規另有規定外，應按各事項類別，訂定處理期間公告之。 未依前項規定訂定處理期間者，其處理期間為二個月。 行政機關未能於前二項所定期間內處理終結者，得於原處理期間之限度內延長之，但以一次為限。 前項情形，應於原處理期間屆滿前，將延長之事由通知申請人。 行政機關因天災或其他不可歸責之事由，致事務之處理遭受阻礙時，於該項事由終止前，停止	**제51조**（인민의 신청에 대한 행정기관의 처리기한） 행정기관은 인민이 법규에 기초한 신청을 하는 때에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각 사항별로 처리기한을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앞 항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 처리기한을 정하는 경우 그 처리기한은 2개월까지로 한다. 행정기관이 앞의 두 항에서 정하는 기한 안에 처분을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의 범위에서 1회에 한정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앞 항의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처분의 처리기간이 끝나기 전에 연장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정한 자에게 책임을 묻기가 불가능한 사유로 인하여 처분을

處理期間之進行。	처리하는 기간 및 기한을 지킬 수 없는 경우 그 사유가 끝나기 전에 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第九節 費用	**제9절 비용**
第五十二條（行政程序所生費用之負擔） 行政程序所生之費用，由行政機關負擔。但專為當事人或利害關係人利益所支出之費用，不在此限。 因可歸責於當事人或利害關係人之事由，致程序有顯著之延滯者，其因延滯所生之費用，由其負擔。	**제52조**（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의 부담） 행정절차에 드는 비용은 행정기관이 부담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기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제외한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자신의 귀책사유로 현저하게 행정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이에 드는 비용은 해당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부담한다.
第五十三條（證人或鑑定人得請求給付費用） 證人或鑑定人得向行政機關請求法定之日費及旅費，鑑定人並得請求相當之報酬。 前項費用及報酬，得請求行政	**제53조**（참고인 및 감정인이 요청할 수 있는 비용） 참고인 및 감정인은 행정절차에 드는 일당과 여비를 행정기관에 요청할 수 있으며, 감정인은 합당한 수당도 요청할 수 있다. 참고인 및 감정인은 행정기관이

機關預行酌給之。	앞 항의 비용 및 수당을 고려하여 미리 지급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第一項費用，除法規另有規定外，其標準由行政院定之。	제1항의 비용은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원이 그 기준을 정한다.
第十節 聽證程序	**제10절 청문절차**
第五十四條（適用聽證程序） 依本法或其他法規舉行聽證時，適用本節規定。	**제54조**（청문절차의 적용） 이 법 또는 다른 법규에 따라 청문을 하는 때에 이 법 제10절의 규정을 적용한다.
第五十五條（聽證之通知及公告） 行政機關舉行聽證前，應以書面記載下列事項，並通知當事人及其他已知之利害關係人，必要時並公告之： 一、聽證之事由與依據。 二、當事人之姓名或名稱及其住居所、事務所或營業所。 三、聽證之期日及場所。 四、聽證之主要程序。	**제55조**（청문의 통지 및 공고） 행정기관은 청문을 하기 전에 서면으로 다음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여 당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공고도 하여야 한다. 1. 청문 사유와 근거 2. 당사자의 성명·명칭, 주소지, 사무소·영업소 3. 청문 기간 및 장소 4. 청문의 주요 절차

五、當事人得選任代理人。	5. 당사자가 선임할 수 있는 대리인
六、當事人依第六十一條所得享有之權利。	6. 제61조에 따른 당사자의 권리
七、擬進行預備程序者，預備聽證之期日及場所。	7. 예비절차가 있는 경우 예비청문의 일자 및 장소
八、缺席聽證之處理。	8. 청문 결석시 처리
九、聽證之機關。	9. 청문을 하는 기관
依法規之規定，舉行聽證應預先公告者，行政機關應將前項所列各款事項，登載於政府公報或以其他適當方法公告之。	법규에 따라 청문은 반드시 예고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은 앞 항에서 열거한 각 관의 사항들을 정부 공보에 기재하거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하여야 한다.
聽證期日及場所之決定，應視事件之性質，預留相當期間，便利當事人或其代理人參與。	청문의 일자 및 장소는 사건의 특성에 따라 당사자 및 그의 대리인이 참석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청문일까지 적당한 기간을 두고 예고되어야 한다.
第五十六條（變更聽證期日或場所）	**제56조**（청문의 일자 및 장소의 변경）
行政機關得依職權或當事人之申請，變更聽證期日或場所，但以有正當理由為限。	행정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의 일자 및

	장소를 변경할 수 있다.
行政機關為前項之變更者，應依前條規定通知並公告。	행정기관이 앞 항의 변경을 하는 경우 제55조가 규정하는 통지와 공고도 하여야 한다.
第五十七條（聽證之主持人） 聽證，由行政機關首長或其指定人員為主持人，必要時得由律師、相關專業人員或其他熟諳法令之人員在場協助之。	**제57조**（청문 주재자） 청문은 행정기관 수장(首長) 또는 그가 선정하는 자가 주재하며 필요시 변호사·관련 전문가·그 밖에 법령을 잘 알고 있는 자가 현장에서 협조할 수 있다.
第五十八條（聽證之預備程序） 行政機關為使聽證順利進行，認為必要時，得於聽證期日前，舉行預備聽證。	**제58조**（청문의 예비 절차） 행정기관은 청문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예비 청문이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청문일 전에 예비 청문을 할 수 있다.
預備聽證得為下列事項： 一、議定聽證程序之進行。 二、釐清爭點。 三、提出有關文書及證據。 四、變更聽證之期日、場所與	예비 청문에서는 다음 각 관의 사항을 처리할 수 있다. 1. 청문의 진행 절차에 대한 논의 및 결정 2. 쟁점 정리 3. 관련 문서 및 증거의 제출 4. 청문의 일자·장소 및 주재자

主持人。 預備聽證之進行，應作成紀錄。	변경 예비 청문은 그 진행 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第五十九條（聽證公開之原則及例外） 聽證，除法律另有規定外，應公開以言詞為之。 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主持人得依職權或當事人之申請，決定全部或一部不公開： 一、公開顯然有違背公益之虞者。 二、公開對當事人利益有造成重大損害之虞者。	**제59조**（청문 공개의 원칙 및 예외） 청문은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구두로 공개 진행한다.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재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청문의 공개가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청문의 공개가 당사자의 이익에 심각한 손해를 입힐 우려가 있는 경우
第六十條（聽證之開始） 聽證以主持人說明案由為始。 聽證開始時，由主持人或其指定之人說明事件之內容要旨。	**제60조**（청문의 시작） 청문은 주재자의 사건 설명으로 시작한다. 청문을 시작할 때에 주재자 또는 그가 선정하는 자가 사건 내용

	의 개요를 설명하여야 한다.
第六十一條（聽證當事人之權利） 當事人於聽證時，得陳述意見、提出證據，經主持人同意後並得對機關指定之人員、證人、鑑定人、其他當事人或其代理人發問。	**제61조**（청문 당사자의 권한） 당사자는 청문 동안에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주재자가 동의하는 경우 기관이 선정하는 자·참고인·감정인·그 밖의 당사자 및 그의 대리인에게 질문할 수 있다.
第六十二條（聽證主持人之職權） 主持人應本中立公正之立場，主持聽證。 主持人於聽證時，得行使下列職權： 一、就事實或法律問題，詢問當事人、其他到場人，或促其提出證據。 二、依職權或當事人之申請，委託相關機關為必要之調	**제62조**（청문 주재자의 직권） 청문 주재자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을 지키며 청문을 진행하여야 한다. 주재자는 청문을 할 때 직권으로 다음 각 관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1. 사실 또는 법적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그 밖의 청문 현장 참석자에게 질문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권한 2.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기관에 필요한 조

查。	사의 이행을 위탁할 권한
三、通知證人或鑑定人到場。	3. 참고인·감정인이 청문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권한
四、依職權或申請，通知或允許利害關係人參加聽證。	4. 직권 또는 신청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청문에 참여하도록 통지하거나 허가할 권한
五、許可當事人及其他到場人之發問或發言。	5. 당사자 및 그 밖의 청문 현장 참석자가 질문하거나 발언하도록 허가할 권한
六、為避免延滯程序之進行，禁止當事人或其他到場之人發言；有妨礙聽證程序而情節重大者，並得命其退場。	6. 청문의 진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당사자 또는 그 밖의 청문 현장 참석자의 발언을 금지하고 청문의 진행을 심각하게 방해하는 경우 해당하는 자에게 퇴장 명령을 할 권한
七、當事人一部或全部無故缺席者，逕行開始、延期或終結聽證。	7. 당사자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청문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 청문의 시작·연기·종결을 결정할 권한
八、當事人曾於預備聽證中提出有關文書者，得以其所載內容視為陳述。	8. 당사자가 예비 청문에 관련 문서를 이미 제출한 경우 그 문서에 기재된 내용을 출석

	하여 진술한 것으로 볼 권한
九、認為有必要時，於聽證期日結束前，決定繼續聽證之期日及場所。	9. 청문을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청문의 종결 전에 다음 청문의 일자 및 장소를 결정할 권한
十、如遇天災或其他事故不能聽證時，得依職權或當事人之申請，中止聽證。	10.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고로 청문이 불가능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청문의 진행을 정지할 권한
十一、採取其他為順利進行聽證所必要之措施。	11. 그 밖에 청문을 순조롭게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한
主持人依前項第九款決定繼續聽證之期日及場所者，應通知未到場之當事人及已知之利害關係人。	주재자가 제9관에 따라 다음 청문의 일자 및 장소를 결정하는 경우 현장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第六十三條（當事人申明異議） 當事人認為主持人於聽證程序進行中所為之處置違法或不當者，得即時聲明異議。	**제63조**（당사자의 이의제기） 당사자는 주재자가 청문하는 때에 취한 조치가 법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지하는 경우 즉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主持人認為異議有理由者，應即撤銷原處置，認為無理由者，應即駁回異議。	주재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원래의 조치를 철회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第六十四條（聽證紀錄之作成及內容）	**제64조**（청문 기록의 작성 및 내용）
聽證，應作成聽證紀錄。	청문은 반드시 청문 기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前項紀錄，應載明到場人所為陳述或發問之要旨及其提出之文書、證據，並記明當事人於聽證程序進行中聲明異議之事由及主持人對異議之處理。	청문 기록에는 청문 현장 참석자가 진술하거나 질문하는 내용의 개요, 그가 제출하는 문서·증거, 당사자가 청문의 진행 중에 하는 이의제기의 이유, 그 이의제기에 대한 주재자의 처리를 기재하여야 한다.
聽證紀錄，得以錄音、錄影輔助之。	청문 기록은 녹음·녹화 등으로 보충할 수 있다.
聽證紀錄當場製作完成者，由陳述或發問人簽名或蓋章；未當場製作完成者，由主持人指定日期、場所供陳述或發問人閱覽，	청문 기록이 청문 현장에서 작성 완료되는 경우에는 진술하거나 질문한 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고, 청문 기록이 청문 현장에서 작성

並由其簽名或蓋章。	완료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재자가 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진술하거나 질문한 자가 공동으로 열람하고 서명 또는 날인한다.
前項情形，陳述或發問人拒絕簽名、蓋章或未於指定日期、場所閱覽者，應記明其事由。	앞 항의 상황에서 진술하거나 질문한 자가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거나, 주재자가 정하는 일자 및 장소에서 열람하지 아니하는 경우 반드시 사유를 기록하여야 한다.
陳述或發問人對聽證紀錄之記載有異議者，得即時提出。主持人認異議有理由者，應予更正或補充；無理由者，應記明其異議。	진술하거나 질문한 자는 청문기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즉시 이의제기를 하여야 한다. 주재자는 당사자의 이의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록을 정정하거나 보충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도 그 이의제기의 내용은 기록하여야 한다.
第六十五條（聽證之終結） 主持人認當事人意見業經充分陳述，而事件已達可為決定之程度者，應即終結聽證。	**제65조**（청문의 종결） 주재자는 해당 사안에 대하여 당사자의 의견 진술이 충분하게 이루어져서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도가 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마쳐야 한다.
第六十六條（行政機關得再為聽證） 聽證終結後，決定作成前，行政機關認為必要時，得再為聽證。	**제66조**（행정기관이 청문을 재개할 권한） 청문이 종결된 뒤 처분을 하기 전에 행정기관이 청문을 재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청문을 재개할 수 있다.
第十一節 送達	**제11절 송달**
第六十七條（送達由行政機關為之） 送達，除法規另有規定外，由行政機關依職權為之。	**제67조**（행정기관의 송달에 대한 권한） 송달은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한다.
第六十八條（送達方式及送達人） 送達由行政機關自行或交由郵政機關送達。 行政機關之文書依法規以電報交換、電傳文件、傳真電傳或其	**제68조**（송달 방식 및 송달인） 송달은 행정기관이 직접 하거나 우정사업담당기관이 송달하도록 한다. 행정기관의 문서를 법규에 따라 전보(telegraph)·텔렉스(telex)·

他電子文件行之者，視為自行送達。	팩스·그 밖의 전자문서 방식으로 보내는 경우 행정당국이 그 문서를 직접 송달한 것으로 본다.
由郵政機關送達者，以一般郵遞方式為之。但文書內容對人民權利義務有重大影響者，應為掛號。	우정사업담당기관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일반우편 방식으로 보낸다. 다만, 문서 내용이 인민의 권리와 의무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경우에는 등기우편 방식으로 보낸다.
文書由行政機關自行送達者，以承辦人員或辦理送達事務人員為送達人；其交郵政機關送達者，以郵務人員為送達人。	행정기관이 직접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송달 담당자 또는 송달 사무원이 송달인이 된다. 우정사업담당기관이 문서를 송달하는 경우 담당 우체부가 송달인이 된다.
前項郵政機關之送達準用依民事訴訟法施行法第三條訂定之郵政機關送達訴訟文書實施辦法。	앞 항의 우정사업담당기관의 송달은 「민사소송법 시행법」 제3조가 정하는 바에 따른 우정사업담당기관이 소송서류를 송달하는 방법을 준용한다.
第六十九條（對無行為能力人之送達）	**제69조**（송달받을 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
對於無行政程序之行為能力人為送達者，應向其法定代理人為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그의 법

之。 對於機關、法人或非法人之團體為送達者，應向其代表人或管理人為之。 法定代理人、代表人或管理人有二人以上者，送達得僅向其中之一人為之。 無行政程序之行為能力人為行政程序之行為，未向行政機關陳明其法定代理人者，於補正前，行政機關得向該無行為能力人為送達。	정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기관·법인·법인이 아닌 단체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그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법정대리인·대표자·관리인이 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한 사람에게 송달할 수도 있다. 행정절차에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가 행정절차에서 행위를 하고 행정기관에 그의 법정대리인을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이를 보충하여 정정하기 전까지 행정기관은 행위능력이 없는 해당 자에게 송달할 수 있다.
第七十條（對外國法人之送達） 對於在中華民國有事務所或營業所之外國法人或團體為送達者，應向其在中華民國之代表人或管理人為之。 前條第三項規定，於前項送達	**제70조**（송달받을 자가 외국법인인 경우） 중화민국에 사무소 또는 영업소를 설치하는 외국법인이나 단체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중화민국에 있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송달받아야 한다. 대표자·관리인이 2명 이상인

準用之。	경우 제69조의 제3항을 준용한다.
第七十一條（對代理人之送達） 行政程序之代理人受送達之權限未受限制者，送達應向該代理人為之。但行政機關認為必要時，得送達於當事人本人。	**제71조**（송달받을 자가 대리인인 경우） 행정절차에서 대리인이 송달받을 권한을 제한받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대리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당사자 본인에게 송달할 수 있다.
第七十二條（送達之處所） 送達，於應受送達人之住居所、事務所或營業所為之。但在行政機關辦公處所或他處會晤應受送達人時，得於會晤處所為之。 對於機關、法人、非法人之團體之代表人或管理人為送達者，應向其機關所在地、事務所或營業所行之。但必要時亦得於會晤之處所或其住居所行之。	**제72조**（송달의 장소） 송달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居所)·사무소·영업소로 한다. 다만, 행정기관 사무실 또는 다른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는 경우 그 장소에서 문서를 송달할 수 있다. 기관·법인·법인이 아닌 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 송달받을 자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소재지·사무소·영업소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만나는 장소 또는 그의 주소·거소로 한다.

應受送達人有就業處所者，亦得向該處所為送達。	송달받을 자가 직장이 있는 경우 해당 직장으로 송달할 수도 있다.
第七十三條（補充送達及留置送達）	**제73조**（송달 및 교부에 의한 송달에 관한 보충 규정）
於應送達處所不獲會晤應受送達人時，得將文書付與有辨別事理能力之同居人、受雇人或應送達處所之接收郵件人員。	송달하는 장소에서 송달받을 자를 만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동거인·고용된 사람·송달하는 장소에서 우편접수를 담당하는 사람에게 문서를 교부할 수 있다.
前項規定於前項人員與應受送達人在該行政程序上利害關係相反者，不適用之。	앞 항이 열거하는 사람과 송달받을 자가 행정절차상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관계에 있는 경우에는 그 문서를 교부할 수 없다.
應受送達人或其同居人、受雇人、接收郵件人員無正當理由拒絕收領文書時，得將文書留置於應送達處所，以為送達。	송달받을 자·그의 동거인·고용된 사람·송달하는 장소에서 우편접수를 담당하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송달받기를 거부하는 때에는 문서를 송달하는 장소에 놓아두면 송달한 것으로 한다.
第七十四條（寄存送達）	**제74조**（송달 문서의 보관）

送達，不能依前二條規定為之者，得將文書寄存送達地之地方自治或警察機關，並作送達通知書兩份，一份黏貼於應受送達人住居所、事務所、營業所或其就業處所門首，另一份交由鄰居轉交或置於該送達處所信箱或其他適當位置，以為送達。	제72조 및 제73조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문서를 송달하는 장소의 지방자치단체 또는 경찰기관이 보관하도록 맡기고 송달통지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송달받을 자의 주소·거소·사무소·영업소·직장 문 앞에 게시하고 나머지 1부는 이웃에게 교부하여 전달하도록 하거나 송달하는 장소에 있는 우편함 또는 그 밖의 적절한 곳에 두면 송달한 것으로 한다.
前項情形，由郵政機關為送達者，得將文書寄存於送達地之郵政機關。	앞 항의 상황에서 우편사업담당기관이 송달하는 경우 문서를 송달하는 지역에 있는 우편사업담당기관이 보관하도록 맡길 수 있다.
寄存機關自收受寄存文書之日起，應保存三個月。	문서를 보관하는 기관은 문서를 맡아서 보관하는 날부터 3개월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第七十五條（對不特定人之送達方式） 行政機關對於不特定人之送達，得以公告或刊登政府公報或	**제75조**（불특정한 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의 송달 방식） 행정기관은 불특정한 자에게 송달하는 경우 관보·공보·신문에

新聞紙代替之。	공고하는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第七十六條（送達證書之製作及附卷）	**제76조**（송달증명서의 작성 및 발급）
送達人因證明之必要，得製作送達證書，記載下列事項並簽名：	송달인이 송달을 증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여 송달증명서를 작성할 수 있다.
一、交送達之機關。	1. 송달을 명령한 기관
二、應受送達人。	2. 송달받을 자
三、應送達文書之名稱。	3. 송달하는 문서의 명칭
四、送達處所、日期及時間。	4. 송달하는 장소·일자·시간
五、送達方法。	5. 송달 방법
除電子傳達方式之送達外，送達證書應由收領人簽名或蓋章；如拒絕或不能簽名或蓋章者，送達人應記明其事由。	전자문서 방식으로 송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송달증명서에는 문서를 받는 사람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문서를 받는 사람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때에는 송달인이 그 사실을 송달증명서에 기재한다.
送達證書，應提出於行政機關附卷。	송달증명서는 서면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七十七條（對第三人送達之處理	**제77조**（제3자에게 송달한 경우

方式） 送達係由當事人向行政機關申請對第三人為之者，行政機關應將已為送達或不能送達之事由，通知當事人。	의 처리） 송달 시스템은 당사자가 행정기관이 제3자에게 송달한 사유를 질의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이 이미 송달하였거나 송달이 불가능했던 사유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七十八條（公示送達之原因與方式） 對於當事人之送達，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行政機關得依申請，准為公示送達： 一、應為送達之處所不明者。 二、於有治外法權人之住居所或事務所為送達而無效者。 三、於外國或境外為送達，不能依第八十六條之規定辦理或預知雖依該規定辦理而無效者。	**제78조**（송달 원인과 방식의 공시） 당사자에 대한 송달이 다음 각 관의 상황에 해당하여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1. 송달하는 장소가 불명확한 경우 2. 치외법권이 있는 자의 주소·거소·사무소에 송달하여 송달 효력이 없게 되는 경우 3. 외국·국경 밖 지역에 송달하여 제86조에 따른 처리가 불가능하거나 제86조에 따라 처리하더라도 송달 효력이 없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有前項所列各款之情形而無人為公示送達之申請者，行政機關為避免行政程序遲延，認為有必要時，得依職權命為公示送達。	제1항이 열거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나 공시송달을 신청하는 자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다.
當事人變更其送達之處所而不向行政機關陳明，致有第一項之情形者，行政機關得依職權命為公示送達。	당사자가 송달하는 장소를 변경하였으나 행정기관에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여 제1항이 열거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명령할 수 있다.
第七十九條（行政機關依職權之公示送達） 依前條規定為公示送達後，對於同一當事人仍應為公示送達者，依職權為之。	**제79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제78조가 정하는 공시송달을 한 뒤에도 같은 당사자에게 다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신청없이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第八十條（公示送達之方式） 公示送達應由行政機關保管送	**제80조**（공시송달의 방식） 공시송달은 송달하는 문서를 행

達之文書，而於行政機關公告欄黏貼公告，告知應受送達人得隨時領取；並得由行政機關將文書或其節本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	정기관이 보관하고 행정기관의 공고란에 공고하여 송달받을자가 언제든지 받아갈 수 있다고 고지하여야 하며, 행정기관은 문서 또는 그 발췌본을 공보 또는 신문에 게재하여야 한다.
第八十一條（公示送達之生效日期） 公示送達自前條公告之日起，其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者，自最後刊登之日起，經二十日發生效力；於依第七十八條第一項第三款為公示送達者，經六十日發生效力。但第七十九條之公示送達，自黏貼公告欄翌日起發生效力。	**제81조**（공시송달의 효력 발생） 공시송달의 효력은 제80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공보 또는 신문에 공고하는 기간의 마지막 날부터 2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제78조제1항제3관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60일이 경과하면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제79조에 따라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의 공고란에 공고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第八十二條（公示送達證書之附卷） 為公示送達者，行政機關應製	**제82조**（공시송달증명서의 서면작성） 공시송달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

作記載該事由及年、月、日、時之證書附卷。	은 공시송달증명서를 작성하여 해당 사유와 연·월·일·시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八十三條（送達代收人之送達） 當事人或代理人經指定送達代收人，向行政機關陳明者，應向該代收人為送達。	**제83조**（대리 수취인에게 송달하는 경우）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대리 수취인을 지정하여 행정기관에 명확하게 밝히는 경우 송달하는 문서는 해당 대리 수취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郵寄方式向行政機關提出者，以交郵地無住居所、事務所及營業所者，行政機關得命其於一定期間內，指定送達代收人。	우편방식으로 행정기관에 제출하는데 우편상 주소·거소·사무소·영업소가 없는 경우 행정기관은 상당한 기간 안에 대리 수취인을 지정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如不於前項期間指定送達代收人並陳明者，行政機關得將應送達之文書，註明該當事人或代理人之住居所、事務所或營業所，交付郵政機關掛號發送，並以交付文書時，視為送達時。	앞 항의 상당한 기간 안에 대리 수취인을 지정하여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송달하는 문서에 해당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주소·거소·사무소·영업소를 주석으로 기재하고 교부하여 우편사업담당기관이 등기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문서를 교부한 때를 송달한 때로 본다.
第八十四條（得為送達之時間） 送達，除第六十八條第一項規定交付郵政機關或依第二項之規定辦理者外，不得於星期日或其他休息日或日出前、日沒後為之。但應受送達人不拒絕收領者，不在此限。	**제84조**（송달하는 시간） 제68조제1항에 따라 문서를 교부하는 우편사업담당기관 또는 제68조제2항에 따라 문서를 처리하는 기관을 제외한 다른 자들은 일요일·그 밖의 휴무일·일출 전·일몰 후 시간에 송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송달받을 자가 문서 받기를 거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八十五條（不能為送達時之處理方式） 不能為送達者，送達人應製作記載該事由之報告書，提出於行政機關附卷，並繳回應送達之文書。	**제85조**（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처리 방식）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인은 해당 사유를 보고서에 기재하여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八十六條（於外國或境外送達之方式） 於外國或境外為送達者，應囑	**제86조**（외국 또는 국경 밖 지역에 송달하는 방식） 외국 또는 국경 밖 지역에 송달

託該國管轄機關或駐在該國之中華民國使領館或其他機構、團體為之。	하는 경우 해당 국가·지역의 관할기관이나 해당 국가·지역의 중화민국 영사관이나 그 밖의 기구·단체에 송달을 의뢰한다.
不能依前項規定為送達者，得將應送達之文書交郵政機關以雙掛號發送，以為送達，並將掛號回執附卷。	앞 항에 따른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 송달하는 문서를 우편사업담당기관에 교부하여 배달증명 우편으로 발송하도록 한 뒤 송달한 것으로 처리하고 배달증명서를 작성한다.
第八十七條（對駐外人員之送達）	**제87조**（외국에 주재하는 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對於駐在外國之中華民國大使、公使、領事或其他駐外人員為送達者，應囑託外交部為之。	외국에 주재하는 중화민국 대사·공사·영사·그 밖의 사람이 송달받을 자인 경우 외교부에 송달을 의뢰한다.
第八十八條（對現役軍人之送達）	**제88조**（현역 군인이 송달받을 자인 경우）
對於在軍隊或軍艦服役之軍人為送達者，應囑託該管軍事機關或長官為之。	군대나 군함에서 복무하는 군인이 송달받을 자인 경우 해당 군사기관이나 해당 기관의 장(長)에게 송달을 의뢰한다.

第八十九條（對在監所人之送達） 對於在監所人為送達者，應囑託該監所長官為之。	**제89조**（수용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교정시설에 수용된 사람이 송달받을 자인 경우 해당 시설의 장(長)에게 의뢰한다.
第九十條（對有治外法權人之送達） 於有治外法權人之住居所或事務所為送達者，得囑託外交部為之。	**제90조**（치외법권이 있는 자가 송달받을 자인 경우） 치외법권이 있는 자의 주소·거소·사무소에 송달하는 경우에는 외교부에 송달을 의뢰한다.
第九十一條（對囑託送達結果通知之處理） 受囑託之機關或公務員，經通知已為送達或不能為送達者，行政機關應將通知書附卷。	**제91조**（송달 의뢰의 결과 통지） 송달 의뢰를 받은 기관이나 공무원은 송달한 결과 또는 송달이 불가능한 사유를 통지서에 기재하여 행정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第二章 行政處分	**제2장 행정처분**
第一節 行政處分之成立	**제1절 행정처분의 성립**
第九十二條（行政處分與一般處分	**제92조**（행정처분과 일반처분에

之定義） 本法所稱行政處分，係指行政機關就公法上具體事件所為之決定或其他公權力措施而對外直接發生法律效果之單方行政行為。 前項決定或措施之相對人雖非特定，而依一般性特徵可得確定其範圍者，為一般處分，適用本法有關行政處分之規定。有關公物之設定、變更、廢止或其一般使用者，亦同。	대한 정의） 이 법에서 행정처분이란 행정기관이 공법상 구체적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그 밖에 공권력 행사로 대외적으로 직접적인 법적 효과가 당사자 한쪽에게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앞 항의 결정 또는 공권력 행사의 상대방이 특정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인 특성에 따라 조치 대상의 범위를 확정할 수 있는 경우 일반처분으로 인정하고 이 법의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공공물 지정·변경·폐지·일반적 사용에 대해서도 이 법의 행정처분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
第九十三條（行政處分附款之容許性及種類） 行政機關作成行政處分有裁量權時，得為附款。無裁量權者，以法律有明文規定或為確保行政處分法定要件之履行而以該要件為附款內容者為限，始得為之。	**제93조**（행정처분 부관의 허가적 성질 및 종류） 행정기관이 재량권이 있는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부관(附款)을 붙일 수 있다. 재량권이 없는 경우 법률이 명확하게 규정하거나 행정처분이 법률이 규정하는 요건

	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부관을 붙일 수 있다.
前項所稱之附款如下：	앞 항의 부관이란 다음 각 관의 사항을 말한다.
一、期限。	1. 기한
二、條件。	2. 조건
三、負擔。	3. 부담
四、保留行政處分之廢止權。	4. 행정처분 철회권의 유보
五、保留負擔之事後附加或變更。	5. 부담의 사후 추가·변경의 유보
第九十四條（行政處分附款之限制）	**제94조**（행정처분 부관의 제한）
前條之附款不得違背行政處分之目的，並應與該處分之目的具有正當合理之關聯。	앞 조의 부관은 행정처분의 목적에 위배되어서는 아니 되며 해당 행정처분 목적과의 연관성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한다.
第九十五條（行政處分之方式）	**제95조**（행정처분의 방식）
行政處分除法規另有要式之規定者外，得以書面、言詞或其他方式為之。	행정처분은 법규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구두·그 밖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以書面以外方式所為之行政處分，其相對人或利害關係人有正	서면 외에 다른 방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당사자·이해관

當理由要求作成書面時，處分機關不得拒絕。	계인이 정당한 이유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교부하도록 요구하면 행정처분을 하는 기관은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第九十六條（書面行政處分之應記載事項） 行政處分以書面為之者，應記載下列事項： 一、處分相對人之姓名、出生年月日、性別、身分證統一號碼、住居所或其他足資辨別之特徵；如係法人或其他設有管理人或代表人之團體，其名稱、事務所或營業所，及管理人或代表人之姓名、出生年月日、性別、身分證統一號碼、住居所。 二、主旨、事實、理由及其法令依據。 三、有附款者，附款之內容。	**제96조**（행정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 행정처분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 다음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신분증 번호, 주소·거소·그 밖에 식별 가능한 특징: 법인 또는 관리인·대표자가 있는 그 밖의 단체는 명칭, 사무소·영업소, 관리인·대표자의 성명, 출생연월일, 성별, 신분증 번호, 주소·거소 2. 처분의 취지, 사실, 이유, 법적 근거 3. 부관이 있는 경우 부관의 내용

四、處分機關及其首長署名、蓋章，該機關有代理人或受任人者，須同時於其下簽名。但以自動機器作成之大量行政處分，得不經署名，以蓋章為之。	4. 처분하는 기관, 그 기관의 장(長)의 서명·날인, 대리인·수임인이 있는 기관은 그 대리인·수임인의 서명까지 포함(다만, 자동화기기로 작성하는 대량의 행정처분은 서명을 날인으로 갈음할 수 있다)
五、發文字號及年、月、日。	5. 문서 발급번호, 발급 연월일
六、表明其為行政處分之意旨及不服行政處分之救濟方法、期間及其受理機關。	6. 행정처분에 대한 의견 표명 및 불복을 하는 방법, 청구기간 및 청구를 접수하는 기관
前項規定於依前條第二項作成之書面，準用之。	앞 항에서 규정하는 내용을 제95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서면에도 준용한다.
第九十七條（書面行政處分得不記明理由之情形） 書面之行政處分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得不記明理由：	**제97조**（행정처분의 이유를 서면에 기재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의 이유가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서면에 그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一、未限制人民之權益者。	1. 인민의 권익을 제한하지 아

	니하는 경우
二、處分相對人或利害關係人無待處分機關之說明已知悉或可知悉作成處分之理由者。	2. 처분의 상대가 되는 당사자·이해관계인이 처분의 이유를 이미 알고 처분을 인정하고 있거나 당사자·이해관계인이 처분의 이유를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경우
三、大量作成之同種類行政處分或以自動機器作成之行政處分依其狀況無須說明理由者。	3. 상황에 따라 처분의 이유를 생략하고 있는 처분과 같은 종류로 취급되는 대량의 행정처분 일부 또는 자동화기기로 작성하는 행정처분 일부
四、一般處分經公告或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者。	4. 공고하거나 공보·신문에 게재하는 일반적인 행정처분
五、有關專門知識、技能或資格所為之考試、檢定或鑑定等程序。	5. 전문지식·기능·자격에 관련된 시험·검정·감정(鑑定) 등의 절차
六、依法律規定無須記明理由者。	6. 법률에서 이유를 기재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
第九十八條（告知救濟期間錯誤之處理及未告知救濟期間或告知錯誤未為更正之效果）	**제98조**（행정기관이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거나 청구기간에 관련한 결함을 정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處分機關告知之救濟期間有錯誤時，應由該機關以通知更正之，並自通知送達之翌日起算法定期間。	처분하는 기관이 청구기간을 잘못 고지하는 때에는 해당 기관이 이를 정정하여 통지하고 이와 관련한 법정기간은 통지를 송달한 다음 날로부터 계산하여야 한다.
處分機關告知之救濟期間較法定期間為長者，處分機關雖以通知更正，如相對人或利害關係人信賴原告知之救濟期間，致無法於法定期間內提起救濟，而於原告知之期間內為之者，視為於法定期間內所為。	처분하는 기관이 청구기간을 법정기간보다 길게 계산하여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당사자·이해관계인이 기존의 고지 내용이 옳다고 믿어서 실제 법정기간 안에 청구를 제기하지 하니하고 기존에 고지된 청구기간 안에 청구를 제기하는 경우 기존에 고지된 청구기간을 법정기간으로 본다.
處分機關未告知救濟期間或告知錯誤未為更正，致相對人或利害關係人遲誤者，如自處分書送達後一年內聲明不服時，視為於法定期間內所為。	처분하는 기관이 청구기간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청구기간에 관련한 결함을 정정하지 아니하여서 당사자·이해관계인의 청구가 접수되지 아니한 경우 서면으로 작성된 처분이 송달된 때로부터 1년 안에 이에 대한 불복을 표명하면 법정기간 안에 청구한 것으로 본다.

第九十九條（未告知受理聲明不服之管轄機關或告知錯誤）	**제99조**（청구를 접수하는 관할기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는 경우）
對於行政處分聲明不服，因處分機關未為告知或告知錯誤致向無管轄權之機關為之者，該機關應於十日內移送有管轄權之機關，並通知當事人。	처분하는 기관이 청구를 접수하는 관할기관을 고지하지 아니하거나 잘못 고지하여서 관할권이 없는 기관에 청구를 접수하는 경우 해당 청구를 접수한 기관은 10일 안에 그 청구를 관할권이 있는 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前項情形，視為自始向有管轄權之機關聲明不服。	앞 항의 상황에서는 관할권이 있는 기관에 청구가 접수되는 때에 청구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第一百條（行政處分之通知） 書面之行政處分，應送達相對人及已知之利害關係人；書面以外之行政處分，應以其他適當方法通知或使其知悉。	**제100조**（행정처분의 통지） 행정처분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을 서면 외에 다른 형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그가 알도록 하여야 한다.
一般處分之送達，得以公告或	일반적인 행정처분의 송달은 공

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代替之。	고하거나 공보·신문에 게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第一百零一條（行政處分之更正） 行政處分如有誤寫、誤算或其他類此之顯然錯誤者，處分機關得隨時或依申請更正之。	**제101조**（행정처분의 정정） 행정처분에 오기(誤記), 오산(誤算)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명백한 잘못이 있을 때에는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지체 없이 행정처분의 내용을 정정하여야 한다.
前項更正，附記於原處分書及其正本，如不能附記者，應製作更正書，以書面通知相對人及已知之利害關係人。	앞 항의 정정을 하는 경우 기존의 처분이 기재된 문서 및 그 원본에 부기(附記)하여야 한다. 부기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정사유서를 작성하여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第二節 陳述意見及聽證	**제2절 의견제출 및 청문**
第一百零二條（作成限制或剝奪人民自由或權利之行政處分前給予相對人陳述意見之機會）	**제102조**（행정기관이 인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 제39조에 따라 관계자에게 의

行政機關作成限制或剝奪人民自由或權利之行政處分前，除已依第三十九條規定，通知處分相對人陳述意見，或決定舉行聽證者外，應給予該處分相對人陳述意見之機會。但法規另有規定者，從其規定。	견을 진술하도록 사전에 통지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인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을 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법규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第一百零三條（無須給予相對人陳述意見之情形） 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行政機關得不給予陳述意見之機會： 一、大量作成同種類之處分。 二、情況急迫，如予陳述意見之機會，顯然違背公益者。 三、受法定期間之限制，如予陳述意見之機會，顯然不能遵行者。	**제103조**（처분의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가 없는 경우）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1. 같은 종류의 처분을 대량으로 작성하는 경우 2. 긴급한 상황이어서 의견제출을 받으면 공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의견제출을 받으면 법정기간의 제한으로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

四、行政強制執行時所採取之各種處置。	4. 해당 처분이 강제집행 절차에 따른 조치인 경우
五、行政處分所根據之事實，客觀上明白足以確認者。	5. 행정처분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증명된 경우
六、限制自由或權利之內容及程度，顯屬輕微，而無事先聽取相對人意見之必要者。	6. 인민의 자유·권리를 제한하는 내용 및 정도가 경미하여 상대방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명확한 경우
七、相對人於提起訴願前依法律應向行政機關聲請再審查、異議、復查、重審或其他先行程序者。	7. 상대방이 소원(訴願)을 제기하기 전에 법률에 따라 행정기관에 이의 제기 및 검토·재검사·재심사·그 밖의 사전절차를 요청한 경우
八、為避免處分相對人隱匿、移轉財產或潛逃出境，依法律所為保全或限制出境之處分。	8. 처분의 상대방이 재산을 은닉·이동·잠적하여 해외로 도피시킬 위험을 피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출국제한·출국금지를 처분하는 경우
第一百零四條（通知相對人陳述意見之方式） 行政機關依第一百零二條給予相對人陳述意見之機會時，應以	**제104조**（상대방에게 의견제출을 통지하는 방식） 행정기관은 제102조에 따라 상대방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는

書面記載下列事項通知相對人，必要時並公告之：	때에 서면으로 다음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여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공고도 하여야 한다.
一、相對人及其住居所、事務所或營業所。	1.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 주소·거소 또는 사무소·영업소
二、將為限制或剝奪自由或權利行政處分之原因事實及法規依據。	2. 자유·권리를 제한하거나 박탈하는 행정처분을 하려는 원인이 되는 사실 및 법적 근거
三、得依第一百零五條提出陳述書之意旨。	3. 제105조에 따라 의견을 표명하는 진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四、提出陳述書之期限及不提出之效果。	4. 진술서를 제출하는 기한과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五、其他必要事項。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前項情形，行政機關得以言詞通知相對人，並作成紀錄，向相對人朗讀或使閱覽後簽名或蓋章；其拒絕簽名或蓋章者，應記明其事由。	앞 항의 상황에서 행정기관은 상대방에게 구두로 통지할 수 있으며, 기록을 작성하여 상대방이 읽도록 하거나 열람한 뒤 서명·날인하도록 할 수도 있다. 상대방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第一百零五條（陳述書之內容及不提出陳述書之效果）	**제105조**（진술서의 내용 및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처리방법）
行政處分之相對人依前條規定提出之陳述書，應為事實上及法律上陳述。	행정처분의 당사자가 제104조에 따라 제출하는 진술서는 사실상의 진술 및 법률상의 진술이다.
利害關係人亦得提出陳述書，為事實上及法律上陳述，但應釋明其利害關係之所在。	이해관계인이 제출하는 진술서도 사실상의 진술 및 법률상의 진술이지만, 이해관계인은 진술서에 처분과 관련한 이해관계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
不於期間內提出陳述書者，視為放棄陳述之機會。	의견제출 기간 안에 진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하는 것으로 본다.
第一百零六條（相對人或利害關係人得以言詞代替陳述書）	**제106조**（당사자·이해관계인이 구두진술로 서면진술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行政處分之相對人或利害關係人得於第一百零四條第一項第四款所定期限內，以言詞向行政機關陳述意見代替陳述書之提出。	행정처분의 당사자·이해관계인은 제104조제1항제4관에서 정하는 기한까지 행정기관에 서면으로 진술서를 제출하는 대신에 구두로

以言詞陳述意見者，行政機關應作成紀錄，經向陳述人朗讀或使閱覽確認其內容無誤後，由陳述人簽名或蓋章；其拒絕簽名或蓋章者，應記明其事由。陳述人對紀錄有異議者，應更正之。	의견을 진술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당사자·이해관계인이 구두로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기록하여 진술인에게 낭독하거나 열람하도록 한 뒤에 그 내용이 틀림없는 경우 서명·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진술인이 서명·날인을 거부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진술인은 기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정정을 요구할 수 있다.
第一百零七條（聽證之範圍） 行政機關遇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舉行聽證： 一、法規明文規定應舉行聽證者。 二、行政機關認為有舉行聽證之必要者。	**제107조**（청문의 범위） 행정기관은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황인 경우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법규에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2. 행정기관이 청문을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第一百零八條（經聽證作成處分應斟酌之事項） 行政機關作成經聽證之行政處	**제108조**（청문을 거쳐 처분하는 경우 숙고하여야 하는 사항） 제43조에서 규정하는 경우를

分時，除依第四十三條之規定外，並應斟酌全部聽證之結果。但法規明定應依聽證紀錄作成處分者，從其規定。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청문을 거쳐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청문 내용 전부를 숙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에서 청문 기록에 따라 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前項行政處分應以書面為之，並通知當事人。	앞 항의 행정처분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第一百零九條（不服經聽證作成處分之救濟） 不服依前條作成之行政處分者，其行政救濟程序，免除訴願及其先行程序。	**제109조**（청문을 거쳐 통지한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절차） 제108조에 따른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그 행정 구제절차에서 소원 및 사전절차를 생략한다.
第三節 行政處分之效力	**제3절 행정처분의 효력**
第一百十條（行政處分之效力） 書面之行政處分自送達相對人及已知之利害關係人起；書面以外之行政處分自以其他適當方法通知或使其知悉時起，依送達、通知或使知悉之內容對其發生效力。	**제110조**（행정처분의 효력） 서면으로 작성한 행정처분은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송달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서면이 아닌 형식으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거나

一般處分自公告日或刊登政府公報、新聞紙最後登載日起發生效力。但處分另訂不同日期者，從其規定。	그가 알도록 하게 하는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행정처분은 공고일 또는 공보·신문에 게재하는 마지막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처분에 별도로 효력 발생일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따른다.
行政處分未經撤銷、廢止，或未因其他事由而失效者，其效力繼續存在。	행정처분이 철회·폐지·그 밖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효력은 지속된다.
無效之行政處分自始不生效力。	무효인 행정처분은 그 효력이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다.
第一百十一條（行政處分無效之判斷標準） 行政處分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無效：	**제111조**（행정처분 무효의 판단기준） 행정처분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무효이다.
一、不能由書面處分中得知處分機關者。	1. 서면으로 처분하였으나 처분하는 기관이 어느 기관인지 서면상 알 수 없는 경우
二、應以證書方式作成而未給予證書者。	2. 처분을 문서로 하여야 하나 문서로 주지 아니한 경우

三、內容對任何人均屬不能實現者。	3. 처분의 내용이 현실적으로 실현 불가능한 내용인 경우
四、所要求或許可之行為構成犯罪者。	4. 요구하거나 허가하는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五、內容違背公共秩序、善良風俗者。	5. 처분의 내용이 공공질서·미풍양속을 해하는 내용인 경우
六、未經授權而違背法規有關專屬管轄之規定或缺乏事務權限者。	6. 권한을 위임받지 아니하거나 법규에서 정하는 전속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사무 권한이 없는 경우
七、其他具有重大明顯之瑕疵者。	7. 처분에 심각하고 명백한 결함이 있는 그 밖의 경우
第一百十二條（行政處分一部無效之效力範圍） 行政處分一部分無效者，其他部分仍為有效。但除去該無效部分，行政處分不能成立者，全部無效。	**제112조**（행정처분 일부가 무효인 경우 효력의 범위） 행정처분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밖의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다만, 해당 무효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행정처분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 전부를 무효로 한다.
第一百十三條（行政處分無效之確	**제113조**（행정처분 무효의 확인

認程序） 行政處分之無效，行政機關得依職權確認之。 行政處分之相對人或利害關係人有正當理由請求確認行政處分無效時，處分機關應確認其為有效或無效。	절차）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행정처분의 무효를 결정할 수 있다. 행정처분의 당사자·이해관계인이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행정처분의 무효 결정을 청구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그 행정처분의 효력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第一百十四條（瑕疵行政處分之補正） 違反程序或方式規定之行政處分，除依第一百十一條規定而無效者外，因下列情形而補正： 一、須經申請始得作成之行政處分，當事人已於事後提出者。 二、必須記明之理由已於事後記明者。	**제114조**（행정처분에 결함이 있는 경우의 정정·보충） 제111조에서 행정처분을 무효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처분에 절차 및 방식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는 잘못이 있는 상황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처분을 정정·보충한다. 1. 당사자가 처분을 구하는 신청을 행정기관이 이미 처분을 한 뒤에 제출하는 경우 2.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처분의 이유를 처분을 한 뒤에

	기재하게 되는 경우
三、應給予當事人陳述意見之機會已於事後給予者。	3.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여서 처분 뒤에 의견제출을 하도록 한 경우
四、應參與行政處分作成之委員會已於事後作成決議者。	4. 행정처분에 참여하여야 하는 위원회가 처분을 한 뒤에 의결을 정하는 경우
五、應參與行政處分作成之其他機關已於事後參與者。	5. 행정처분에 참여하여야 하는 그 밖의 기관이 처분을 한 뒤에 참여하는 경우
前項第二款至第五款之補正行為，僅得於訴願程序終結前為之；得不經訴願程序者，僅得於向行政法院起訴前為之。	앞 항의 제2관부터 제5관까지의 정정·보충 행위는 소원(訴願)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하여야 한다. 소원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소가 제기되기 전에 정정·보충을 하여야 한다.
當事人因補正行為致未能於法定期間內聲明不服者，其期間之遲誤視為不應歸責於該當事人之事由，其回復原狀期間自該瑕疵補正時起算。	당사자가 처분의 정정·보충 행위의 영향으로 법정기간 안에 불복을 한다는 의견을 표명하지 못하는 경우 그 기간에 관하여 처분에 결함이 있다고 보고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아니하고 해당 결함을 정정·보충하는 때부터 법정기간을 다시 계산하여야 한다.

第一百十五條（違反土地管轄之效果） 行政處分違反土地管轄之規定者，除依第一百十一條第六款規定而無效者外，有管轄權之機關如就該事件仍應為相同之處分時，原處分無須撤銷。	**제115조**（토지관할을 위반하는 경우） 제111조제6관에서 행정처분을 무효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처분이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도 실제로 관할권이 있는 기관도 해당 사건에 대하여 동일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기존의 처분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
第一百十六條（違法行政處分之轉換） 行政機關得將違法行政處分轉換為與原處分具有相同實質及程序要件之其他行政處分。但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不得轉換： 一、違法行政處分，依第一百十七條但書規定，不得撤銷者。 二、轉換不符作成原行政處分	**제116조**（위법한 행정처분의 변경） 행정기관은 법에 위배되는 행정처분을 기존의 처분과 속성 및 절차가 실질적으로 같은 행정처분으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위법한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제117조여서 그 처분의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 2. 기존의 행정처분과 변경한

之目的者。 三、轉換法律效果對當事人更為不利者。 羈束處分不得轉換為裁量處分。 行政機關於轉換前應給予當事人陳述意見之機會。但有第一百零三條之事由者，不在此限。	행정처분의 목적이 동일하지 아니하는 경우 3. 변경한 행정처분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더 불리한 경우 구속하는 내용의 처분을 재량권 행사에 관한 내용의 처분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행정기관은 처분을 변경하기 전에 당사자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제103조의 사유로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一百十七條（行政處分之撤銷及其限制） 違法行政處分於法定救濟期間經過後，原處分機關得依職權為全部或一部之撤銷；其上級機關，亦得為之。但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不得撤銷：	**제117조**（행정처분의 철회 및 철회 제한） 위법한 행정처분은 법정 구제기간이 지난 뒤 기존의 처분을 한 기관이 직권으로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해당 행정기관의 상급 기관도 처분의 철회에 대하여 같은 권한이 있다. 다만,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처분을 철회하여서는 아니 된다.

一、撤銷對公益有重大危害者。 二、受益人無第一百十九條所列信賴不值得保護之情形，而信賴授予利益之行政處分，其信賴利益顯然大於撤銷所欲維護之公益者。	1. 처분의 철회가 공익을 현저히 해치는 경우 2. 제119조에 열거된 신뢰보호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수혜자가 해당하지 아니하며 행정처분이 신뢰보호에 따라 보장하는 이익이 행정처분의 철회로 수호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현저히 큰 경우
第一百十八條（行政處分撤銷之效力） 違法行政處分經撤銷後，溯及既往失其效力。但為維護公益或為避免受益人財產上之損失，為撤銷之機關得另定失其效力之日期。	**제118조**（행정처분 철회의 효력） 위법한 행정처분은 처분이 철회되면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공익의 수호 및 수혜자의 재산상 손실 방지를 위하여 처분을 철회하는 기관이 별도로 그 효력이 상실되는 날짜를 정할 수 있다.
第一百十九條（信賴不值得保護之情形） 受益人有下列各款情形之一	**제119조**（신뢰보호를 보장하지 아니하는 경우） 수혜자가 다음 각 관의 어느 하

者，其信賴不值得保護： 一、以詐欺、脅迫或賄賂方法，使行政機關作成行政處分者。 二、對重要事項提供不正確資料或為不完全陳述，致使行政機關依該資料或陳述而作成行政處分者。 三、明知行政處分違法或因重大過失而不知者。	나에 해당하는 경우 신뢰보호를 보장하지 아니한다. 1. 사기·협박·뇌물접대 방법으로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작성하도록 한 경우 2.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부정확한 자료를 제공하거나 불완전한 진술을 하여 행정기관이 해당 자료·진술로 행정처분을 하도록 한 경우 3. 행정처분이 위법하거나 행정처분에 심각한 잘못이 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알고도 무시한 경우
第一百二十條（違法授益處分經撤銷後之信賴補償） 授予利益之違法行政處分經撤銷後，如受益人無前條所列信賴不值得保護之情形，其因信賴該處分致遭受財產上之損失者，為撤銷之機關應給予合理之補償。	**제120조**（위법한 수익적 처분의 철회 후 신뢰보호에 대한 보상） 수혜자가 제119조에서 열거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수익적 처분이 위법하여 행정기관이 이를 철회하였으나 신뢰보호 때문에 수혜자가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처분을 철회한 기관은 합리적으로 보상한다.

前項補償額度不得超過受益人因該處分存續可得之利益。 關於補償之爭議及補償之金額，相對人有不服者，得向行政法院提起給付訴訟。	앞 항의 보상한도는 수혜자가 해당 처분으로 존속할 수 있었던 이익으로 한다. 보상에 관한 분쟁이 있거나 보상액에 관하여 불복하는 경우 당사자는 행정법원에 금전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一百二十一條（撤銷權之除斥期間與受益人信賴補償請求權之時效） 第一百十七條之撤銷權，應自原處分機關或其上級機關知有撤銷原因時起二年內為之。 前條之補償請求權，自行政機關告知其事由時起，因二年間不行使而消滅；自處分撤銷時起逾五年者，亦同。	**제121조**（철회 권한의 제척기간과 수혜자의 신뢰보호 보상청구권의 시효） 제117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처분 철회의 제척기간은 기존의 처분을 한 기관 또는 그 상급 기관이 철회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게 되는 때부터 2년까지이다. 제120조에서 규정하는 보상청구권은 행정기관이 그 사유를 고지하는 때부터 2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하며, 행정처분을 철회하는 때부터 5년이 지나도 소멸한다.
第一百二十二條（非授益處分之廢	**제122조**（비수익적 처분의 폐지）

止） 非授予利益之合法行政處分，得由原處分機關依職權為全部或一部之廢止。但廢止後仍應為同一內容之處分或依法不得廢止者，不在此限。	비수익적이며 합법적인 행정처분은 기존의 처분을 한 행정기관이 직권으로 그 행정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처분의 폐지 후에도 같은 내용의 처분을 하거나 법에 따라 해당 처분을 폐지해서는 아니 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一百二十三條（授益處分之廢止） 授予利益之合法行政處分，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得由原處分機關依職權為全部或一部之廢止： 一、法規准許廢止者。 二、原處分機關保留行政處分之廢止權者。 三、附負擔之行政處分，受益人未履行該負擔者。	**제123조**（수익적 처분의 폐지） 수익적이며 합법적인 처분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존의 처분을 한 행정기관은 직권으로 해당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할 수 있다. 1. 법규에서 처분의 폐지를 허용하는 경우 2. 기존의 처분을 한 기관이 행정처분 폐지의 권한을 보류하는 경우 3. 행정기관이 부담을 부가하는 내용의 처분을 하였으나 수

	혜자가 해당 부담을 지지 아니하는 경우
四、行政處分所依據之法規或事實事後發生變更，致不廢止該處分對公益將有危害者。	4.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법규 또는 사실이 처분 뒤에 변경되어서 해당 처분을 폐지하지 아니하면 공익에 현저히 해를 끼치는 경우
五、其他為防止或除去對公益之重大危害者。	5. 그 밖에 공익에 심각한 해를 끼칠 우려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폐지하는 경우
第一百二十四條（授益處分行使廢止權之除斥期間） 前條之廢止，應自廢止原因發生後二年內為之。	**제124조**（수익적 처분을 폐지하는 권한의 제척기간） 제123조에서 규정하는 폐지 권한은 그 처분을 폐지하는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뒤 2년 안에 행사하여야 한다.
第一百二十五條（行政處分廢止之效力） 合法行政處分經廢止後，自廢止時或自廢止機關所指定較後之日時起，失其效力。但受益人未	**제125조**（행정처분 폐지의 효력） 합법적인 행정처분은 해당 처분의 폐지가 확정되면 폐지하는 때부터 또는 처분을 폐지하는 기관

履行負擔致行政處分受廢止者，得溯及既往失其效力。	이 지정하는 날부터 효력을 상실한다고 본다.
第一百二十六條（廢止授益處分之信賴補償） 原處分機關依第一百二十三條第四款、第五款規定廢止授予利益之合法行政處分者，對受益人因信賴該處分致遭受財產上之損失，應給予合理之補償。 第一百二十條第二項、第三項及第一百二十一條第二項之規定，於前項補償準用之。	**제126조**（수익적 처분의 폐지에 대한 신뢰보호 보상） 기존의 처분을 한 기관이 제123조제4관 및 제5관에 따라 수익적이며 합법적인 처분을 폐지하여서 수혜자가 재산 손실을 입은 경우 해당 기관은 합리적으로 보상해주어야 한다. 앞 항의 보상은 제120조제2항 및 제3항, 제121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一百二十七條（受益人不當得利返還義務） 授予利益之行政處分，其內容係提供一次或連續之金錢或可分物之給付者，經撤銷、廢止或條件成就而有溯及既往失效之情形時，受益人應返還因該處分所受領之給付。其行政處分經確認無效者，亦同。	**제127조**（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반환할 의무） 금전 또는 분배 가능한 물건의 일회성 제공 또는 연속적인 지급을 내용으로 하는 수익적 행정처분을 철회·폐지·조건부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도록 결정하는 경우 수혜자는 해당 처분으로 지급받았던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

	다.
前項返還範圍準用民法有關不當得利之規定。	앞 항의 반환범위는 민법의 부당한 이익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行政機關依前二項規定請求返還時，應以書面行政處分確認返還範圍，並限期命受益人返還之。	앞의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반환범위를 결정하는 행정처분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수혜자가 이익을 반환하여야 하는 기한을 명확하게 정하여야 한다.
前項行政處分未確定前，不得移送行政執行。	앞 항의 행정처분을 확정하기 전에 행정집행을 이송하여서는 아니 된다.
第一百二十八條（申請撤銷、廢止或變更處分之要件與期間）	**제128조**（처분의 철회·폐지·변경을 구하는 신청의 요건 및 기간）
行政處分於法定救濟期間經過後，具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相對人或利害關係人得向行政機關申請撤銷、廢止或變更之。但相對人或利害關係人因重大過失而未能在行政程序或救濟程序中主張其事由者，不在此限：	행정처분에 대한 법정 구제기간이 지난 뒤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당사자·이해관계인은 행정기관에 처분의 철회·폐지·변경을 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심각한 과실이 있거나 행

	정절차·구제절차 중에 그 사유를 주장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一、具有持續效力之行政處分所依據之事實事後發生有利於相對人或利害關係人之變更者。	1. 지속적인 효력이 있는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가 되는 사실이 처분 뒤에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하게 바뀌는 경우
二、發生新事實或發現新證據者，但以如經斟酌可受較有利益之處分者為限。	2. 당사자·이해관계인에게 비교적 유리한 사실이나 증거가 새롭게 발견되는 경우
三、其他具有相當於行政訴訟法所定再審事由且足以影響行政處分者。	3. 그 밖에 행정소송법에서 규정하는 검토 사유가 있으면서 행정처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유도 충족하는 경우
前項申請，應自法定救濟期間經過後三個月內為之；其事由發生在後或知悉在後者，自發生或知悉時起算。但自法定救濟期間經過後已逾五年者，不得申請。	앞 항의 신청은 법정 구제기간이 지난 뒤부터 3개월 안에 하여야 한다. 행정처분이 결정된 뒤에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사유를 알게 되는 때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정 구제기간이 지난 뒤 5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능하

	다.
第一百二十九條（申請撤銷、廢止或變更原處分之處置） 行政機關認前條之申請為有理由者，應撤銷、廢止或變更原處分；認申請為無理由或雖有重新開始程序之原因，如認為原處分為正當者，應駁回之。	**제129조**（처분의 철회·폐지·변경을 구하는 신청의 처리） 행정기관이 제128조의 신청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존의 처분을 철회·폐지·변경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해당 신청에 별다른 이유가 없다고 보거나 비록 이유가 있지만 행정절차를 재개(再開)할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경우 기존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그 신청을 기각하여야 한다.
第一百三十條（證書與物品之繳還） 行政處分經撤銷或廢止確定，或因其他原因失其效力後，而有收回因該處分而發給之證書或物品之必要者，行政機關得命所有人或占有人返還之。	**제130조**（문서와 물건의 반환） 행정처분의 철회·폐지가 확정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된 뒤 해당 처분을 위하여 제출한 문서나 물건의 반환을 당사자·이해관계인이 요청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해당 문서나 물건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반환

	을 명령할 수 있다.
前項情形，所有人或占有人得請求行政機關將該證書或物品作成註銷之標示後，再予發還。但依物之性質不能作成註銷標示，或註銷標示不能明顯而持續者，不在此限。	앞 항의 상황에서 소유자·점유자는 해당 문서나 물건에 관하여 행정기관이 주석을 기록한 뒤에 다시 돌려줄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물건의 성질에 따라 주석을 기록하기가 불가능하거나 주석 표시가 명확하게 유지되기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第一百三十一條（公法上請求權之時效與中斷） 公法上之請求權，於請求權人為行政機關時，除法律另有規定外，因五年間不行使而消滅；於請求權人為人民時，除法律另有規定外，因十年間不行使而消滅。	**제131조**（공법상 청구권의 시효와 중단）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법상 청구권은 청구권자가 행정기관인 경우 5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법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청구권자가 인민인 경우 10년 안에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公法上請求權，因時效完成而當然消滅。	공법상 청구권은 시효가 소멸하는 때에 당연소멸한다.
前項時效，因行政機關為實現該權利所作成之行政處分而中	앞 항의 시효는 행정기관이 해당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처

斷。	분을 하는 때에 중단된다.
第一百三十二條（時效不中斷） 行政處分因撤銷、廢止或其他事由而溯及既往失效時，自該處分失效時起，已中斷之時效視為不中斷。	**제132조**（시효의 중단을 논의하지아니하는 경우） 행정처분이 철회·폐지·그 밖의 사유에 따라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해당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부터 이미 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보고 시효의 중단을 논의하지 아니한다.
第一百三十三條（時效之重行起算） 因行政處分而中斷之時效，自行政處分不得訴請撤銷或因其他原因失其效力後，重行起算。	**제133조**（시효를 다시 계산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중단된 시효는 그 행정처분의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나거나 그 밖의 원인으로 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때부터 다시 계산한다.
第一百三十四條（重行起算之時效期間） 因行政處分而中斷時效之請求權，於行政處分不得訴請撤銷後，其原有時效期間不滿五年	**제134조**（중단된 뒤에 다시 시효를 계산하는 경우） 행정처분으로 시효가 중단된 청구권은 행정처분의 철회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이 지난 뒤 기존 시

者，因中斷而重行起算之時效期間為五年。	효의 잔존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다시 그 시효를 5년으로 계산한다.
第三章 行政契約	**제3장 행정계약**
第一百三十五條（行政契約的容許性）	**제135조**（행정계약의 허용성）
公法上法律關係得以契約設定、變更或消滅之。但依其性質或法規規定不得締約者，不在此限。	공법상 법률관계는 계약의 성립·변경·소멸로 발생할 수 있다. 다만, 그 성질이 특수하거나 법규에서 계약을 체결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第一百三十六條（締結和解契約之特別要件）	**제136조**（화해계약의 체결에 관한 특별요건）
行政機關對於行政處分所依據之事實或法律關係，經依職權調查仍不能確定者，為有效達成行政目的，並解決爭執，得與人民和解，締結行政契約，以代替行政處分。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나 법적 관계에 관하여 직권으로 조사하였으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행정목적의 실현 및 분쟁 해결을 위하여 인민과 화해하여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행정처분을 갈음할 수 있다.

第一百三十七條（雙務契約之特別要件） 行政機關與人民締結行政契約，互負給付義務者，應符合下列各款之規定： 一、契約中應約定人民給付之特定用途。 二、人民之給付有助於行政機關執行其職務。 三、人民之給付與行政機關之給付應相當，並具有正當合理之關聯。 行政處分之作成，行政機關無裁量權時，代替該行政處分之行政契約所約定之人民給付，以依第九十三條第一項規定得為附款者為限。	**제137조**（쌍무계약의 특별요건） 행정기관이 서로 채무를 부담하기로 하여 인민과 행정상 체결하는 계약이 쌍무계약인 경우 그 계약의 체결은 다음 각 관의 규정에 부합하여야 한다. 1. 계약 내용에 인민이 부담하는 채무의 특정한 용도를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2. 인민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행정기관이 직무를 집행하는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3. 인민이 부담하는 채무와 행정기관이 부담하는 채무가 대등하여 계약상 정당하고 합리적인 관계가 성립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작성할 재량권이 없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대체하는 행정계약에서 제93조제1항에 따라 부관을 붙여서 인민이 부담하는 채무를 한정할

	수 있다.
第一項契約應載明人民給付之特定用途及僅供該特定用途使用之意旨。	제1항의 계약에는 인민이 부담하는 채무의 특정한 용도 및 해당 특정한 용도로만 채무이행을 제공하겠다는 인민의 의견 표시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第一百三十八條（締約前之公告與意見表示） 行政契約當事人之一方為人民，依法應以甄選或其他競爭方式決定該當事人時，行政機關應事先公告應具之資格及決定之程序。決定前，並應予參與競爭者表示意見之機會。	**제138조**（계약 체결 전 공고 및 의견 표시） 행정계약의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되는 인민을 법에 따라 선발하여야 하거나 그 밖의 경쟁 방식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당사자의 구체적인 자격 및 당사자를 결정하는 절차를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은 해당 당사자를 결정하기 전에 절차에 참여하는 경쟁자에게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第一百三十九條（締結行政契約之方式） 行政契約之締結，應以書面為之。但法規另有其他方式之規定	**제139조**（행정계약 체결 방식） 행정계약의 체결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법규에서 별도로

者，依其規定。	그 밖의 방식을 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第一百四十條（行政契約之特別生效要件） 行政契約依約定內容履行將侵害第三人之權利者，應經該第三人書面之同意，始生效力。	**제140조**（행정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특별요건） 행정계약의 내용을 이행하면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제3자의 서면동의를 얻어야 행정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行政處分之作成，依法規之規定應經其他行政機關之核准、同意或會同辦理者，代替該行政處分而締結之行政契約，亦應經該行政機關之核准、同意或會同辦理，始生效力。	행정기관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 법규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심사·비준·동의·협의를 거쳐야 그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행정처분을 갈음하여 체결하는 행정계약도 다른 행정기관의 심사·비준·동의·협의를 거쳐야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第一百四十一條（行政契約無效之原因） 行政契約準用民法規定之結果為無效者，無效。	**제141조**（행정계약이 무효가 되는 원인） 행정계약은 민법의 계약 관련 규정을 준용하며, 민법에서 그 계약의 결과를 무효로 보는 경우에

行政契約違反第一百三十五條但書或第一百三十八條之規定者，無效。	행정계약이 해당하는 경우 해당 행정계약도 무효가 된다. 행정계약이 제135조의 단서 또는 제138조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도 해당 행정계약은 무효가 된다.
第一百四十二條（代替行政處分之行政契約構成無效原因之特別規定） 代替行政處分之行政契約，有下列各款情形之一者，無效： 一、與其內容相同之行政處分為無效者。 二、與其內容相同之行政處分，有得撤銷之違法原因，並為締約雙方所明知者。 三、締結之和解契約，未符合第一百三十六條之規定者。 四、締結之雙務契約，未符合	**제142조**（행정처분을 갈음하는 행정계약이 무효가 되는 원인에 관한 특별규정）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행정계약이 다음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1. 그 행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이 무효인 경우 2. 그 행정계약과 같은 내용의 행정처분이 법에 위배되어 취소가 가능한 원인이 있고 이를 계약 당사자 양쪽이 모두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경우 3. 화해계약의 체결이 제136조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4. 쌍무계약의 체결이 제137조

第一百三十七條之規定者。	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第一百四十三條（行政契約之一部無效） 行政契約之一部無效者，全部無效。但如可認為欠缺該部分，締約雙方亦將締結契約者，其他部分仍為有效。	**제143조**（행정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행정계약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 그 행정계약 전부를 무효로 한다. 다만, 결함이 있는 해당 부분을 계약의 당사자 양쪽이 모두 알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나머지 부분은 효력이 있다.
第一百四十四條（行政機關之指導與協助） 行政契約當事人之一方為人民者，行政機關得就相對人契約之履行，依書面約定之方式，為必要之指導或協助。	**제144조**（행정기관의 행정지도와 협조） 행정계약 당사자의 한쪽이 인민인 경우 행정기관은 상대방이 계약을 이행하도록 서면으로 이행 방식을 작성하여 필요한 행정지도를 하거나 협조를 한다.
第一百四十五條（契約外公權力行使之損失補償） 行政契約當事人之一方為人民	**제145조**（계약 사항 외의 공권력 행사로 입은 손실에 대한 보상） 행정기관이 행정계약의 당사자

者，其締約後，因締約機關所屬公法人之其他機關於契約關係外行使公權力，致相對人履行契約義務時，顯增費用或受其他不可預期之損失者，相對人得向締約機關請求補償其損失。但公權力之行使與契約之履行無直接必要之關聯者，不在此限。	한쪽이 인민인 행정계약을 체결한 뒤에 그 행정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 소속의 공법인(公法人)인 다른 기관이 계약 사항 외에 공권력을 행사하여서 계약의 상대방인 인민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려는 때에 이행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거나 그 밖에 예기치 못한 중대한 손실을 입는 경우 상대방은 그 행정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에게 해당 손실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공권력의 행사와 계약의 이행 간에 직접적이며 필연적인 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締約機關應就前項請求，以書面並敘明理由決定之。	그 행정계약을 체결한 행정기관은 앞 항의 청구를 접수하고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第一項補償之請求，應自相對人知有損失時起一年內為之。	제1항에 따른 보상 청구는 계약의 상대방인 인민이 관련 손실을 알게된 때부터 1년 안에 제기하여야 한다.
關於補償之爭議及補償之金	보상에 관련한 분쟁이나 보상액

額，相對人有不服者，得向行政法院提起給付訴訟。	에 관하여 상대방이 불복하는 경우 행정법원에 손실에 대한 보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一百四十六條（行政機關單方調整或終止契約之權利） 行政契約當事人之一方為人民者，行政機關為防止或除去對公益之重大危害，得於必要範圍內調整契約內容或終止契約。	**제146조**（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인 행정기관이 그 계약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종료할 권리） 행정기관은 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이 인민인 행정계약을 체결한 뒤 공공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계약을 일방적으로 조정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前項之調整或終止，非補償相對人因此所受之財產上損失，不得為之。	제1항에 따른 조정이나 종료로 상대방인 인민이 재산상 손실을 입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第一項之調整或終止及第二項補償之決定，應以書面敘明理由為之。	제1항에 따른 조정이나 종료의 결정과 제2항에 따른 보상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相對人對第一項之調整難為履	상대방은 제1항에 따른 조정으

行者，得以書面敘明理由終止契約。	로 체결한 계약의 이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相對人對第二項補償金額不同意時，得向行政法院提起給付訴訟。	상대방은 제2항에 따른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손실에 대한 보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一百四十七條（情事變更後契約之調整或終止）	**제147조**（계약 후 외부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계약을 조정하거나 종료하는 경우）
行政契約締結後，因有情事重大變更，非當時所得預料，而依原約定顯失公平者，當事人之一方得請求他方適當調整契約內容。如不能調整，得終止契約。	행정계약을 체결한 뒤에 외부적 환경의 중대한 변화로 계약 당시의 예상과 달리 계약의 공평성이 현저히 침해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당사자 한쪽은 다른 당사자인 상대방에게 계약 내용을 조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계약의 조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을 종료할 수 있다.
前項情形，行政契約當事人之一方為人民時，行政機關為維護公益，得於補償相對人之損失	앞 항의 사실은 행정계약의 당사자 한쪽이 인민인 경우 행정기관은 공공이익의 보호를 목적으로

後，命其繼續履行原約定之義務。	상대방인 인민이 입은 손실을 보상한 뒤에 기존 계약의 이행 의무를 계속적으로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
第一項之請求調整或終止與第二項補償之決定，應以書面敘明理由為之。	제1항에 따른 계약의 조정 또는 계약의 종료와 제2항에 따른 보상의 결정은 서면으로 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야 한다.
相對人對第二項補償金額不同意時，得向行政法院提起給付訴訟。	상대방은 제2항에 따른 보상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법원에 손실에 대한 보상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第一百四十八條（自願接受執行之約定）	**제148조**（행정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집행을 수용하도록 약정하는 경우）
行政契約約定自願接受執行時，債務人不為給付時，債權人得以該契約為強制執行之執行名義。	행정계약에서 자발적으로 집행을 수용하도록 약정하였으나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채권자는 해당 행정계약을 강제집행의 집행 명목으로 삼을 수 있다.
前項約定，締約之一方為中央行政機關時，應經主管院、部或	앞 항의 약정을 포함하여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한쪽이

同等級機關之認可；締約之一方為地方自治團體之行政機關時，應經該地方自治團體行政首長之認可；契約內容涉及委辦事項者，並應經委辦機關之認可，始生效力。	중앙행정기관인 경우 그 약정에 대하여 주무기관인 원(院)·부(部)·이와 같은 급의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그 약정을 포함하여 행정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 한쪽이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약정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 장(長)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행정계약 내용이 위탁 관련 사항인 경우 위탁을 하는 기관의 인가를 받아야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다.
第一項強制執行，準用行政訴訟法有關強制執行之規定。	제1항의 강제집행은 행정소송법의 강제집행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第一百四十九條（行政契約準用民法之相關規定） 行政契約，本法未規定者，準用民法相關之規定。	**제149조**（행정계약이 민법의 규정을 준용하는 경우） 이 법에서 행정계약에 대하여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민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第四章 法規命令及行政規則	**제4장 법규명령 및 행정규칙**

第一百五十條（法規命令之定義） 本法所稱法規命令，係指行政機關基於法律授權，對多數不特定人民就一般事項所作抽象之對外發生法律效果之規定。	**제150조**（법규명령의 정의） 이 법에서 "법규명령"이란 행정기관이 법률에 기초하여 부여받은 하나의 권한이며, 불특정 다수의 인민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의 결정을 통하여 대외적인 법 규범 효력을 가지는 추상적인 규정을 말한다.
法規命令之內容應明列其法律授權之依據，並不得逾越法律授權之範圍與立法精神。	법규명령의 내용은 그 권한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되는 법률에서 명확하게 열거하여야 하며, 이는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의 범위와 입법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
第一百五十一條（法規命令程序之適用範圍） 行政機關訂定法規命令，除關於軍事、外交或其他重大事項而涉及國家機密或安全者外，應依本法所定程序為之。但法律另有規定者，從其規定。	**제151조**（법규명령 절차의 적용 범위） 국방·외교·그 밖에 국가기밀·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중대한 사항을 제외하고 행정기관이 제정하는 법규명령은 법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야 한다. 다만, 법률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 그 규정에 따른다.
法規命令之修正、廢止、停止	법규명령의 개정·폐지·중지·

或恢復適用，準用訂定程序之規定。	회복은 법규명령의 제정 절차에 대한 규정을 준용한다.
第一百五十二條（法規命令之提議）	**제152조**（법규명령의 입안）
法規命令之訂定，除由行政機關自行草擬者外，並得由人民或團體提議為之。	행정기관이 자체적으로 법규명령의 초안을 작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법규명령의 초안은 인민 또는 단체가 작성할 수 있다.
前項提議，應以書面敘明法規命令訂定之目的、依據及理由，並附具相關資料。	앞 항의 초안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규명령의 제정 목적·근거·이유를 명확하게 기재하고 관련 자료도 첨부하여야 한다.
第一百五十三條（法規命令提議之處理原則）	**제153조**（법규명령 입안의 처리 원칙）
受理前條提議之行政機關，應依下列情形分別處理：	제152조의 법규명령 입안을 접수하는 행정기관은 관련 문서를 다음 각 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一、非主管之事項，依第十七條之規定予以移送。	1. 접수한 행정기관의 소관 사항이 아닌 경우 제17조 규정에 따라 주무기관으로 이송한다.
二、依法不得以法規命令規定	2. 법에 따라 법규명령으로 규정

之事項，附述理由通知原提議者。 三、無須訂定法規命令之事項，附述理由通知原提議者。 四、有訂定法規命令之必要者，著手研擬草案。	할 수 없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입안자에게 통지한다. 3. 법규명령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은 이유를 기재하여 입안자에게 통지한다. 4. 법규명령으로 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초안을 연구하여 법규명령으로 제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第一百五十四條（法規命令之預告程序） 行政機關擬訂法規命令時，除情況急迫，顯然無法事先公告周知者外，應於政府公報或新聞紙公告，載明下列事項： 一、訂定機關之名稱，其依法應由數機關會同訂定者，各該機關名稱。 二、訂定之依據。 三、草案全文或其主要內容。	**제154조**（법규명령의 예고 절차） 긴급한 사정으로 입법예고를 하는 것이 명백하게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행정기관은 법규명령 초안을 입안하는 때에 공보·신문에 다음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기관의 명칭, 법에 따라 여러 기관의 소관으로 되어야 하는 법규명령인 경우 각 해당 기관의 명칭 2. 법규명령 제정의 법적 근거 3. 초안 전문(全文) 또는 초안의

四、任何人得於所定期間內向指定機關陳述意見之意旨。	주요 내용 4. 상당한 기간 안에 지정된 기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
行政機關除為前項之公告外，並得以適當之方法，將公告內容廣泛周知。	행정기관은 앞 항의 공고를 하는 동시에 다른 적절한 방법으로 공고의 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다.
第一百五十五條（行政機關得依職權舉行聽證）	**제155조**（행정기관이 직권으로 청문을 할 수 있는 경우）
行政機關訂定法規命令，得依職權舉行聽證。	행정기관은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경우 직권으로 청문을 할 수 있다.
第一百五十六條（聽證前應行預告之事項及內容）	**제156조**（청문 전에 예고하여야 하는 사항 및 내용）
行政機關為訂定法規命令，依法舉行聽證者，應於政府公報或新聞紙公告，載明下列事項：	행정기관이 법규명령을 제정하기 위하여 법에 따라 청문을 하는 경우 공보·신문에 다음 각 관의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一、訂定機關之名稱，其依法應由數機關會同訂定者，	1. 법규명령을 제정하는 기관의 명칭, 법에 따라 여러 기관의

各該機關之名稱。	소관으로 되어야 하는 법규명령인 경우 각 해당 기관의 명칭
二、訂定之依據。	2. 법규명령 제정의 법적 근거
三、草案之全文或其主要內容。	3. 초안 전문(全文) 또는 초안의 주요 내용
四、聽證之日期及場所。	4. 청문의 일시 및 장소
五、聽證之主要程序。	5. 청문의 주요 절차
第一百五十七條（法規命令之發布）	**제157조**（법규명령의 공포）
法規命令依法應經上級機關核定者，應於核定後始得發布。	법규명령은 법에 따라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친 뒤에 공포하여야 한다.
數機關會同訂定之法規命令，依法應經上級機關或共同上級機關核定者，應於核定後始得會銜發布。	소관으로 되는 기관이 여러 기관인 법규명령은 법에 따라 상급기관 또는 공동의 상급기관의 심사를 거친 뒤 해당 법규명령 문서에 소관 기관들이 연달아 서명하고 공포한다.
法規命令之發布，應刊登政府公報或新聞紙。	법규명령은 공보·신문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第一百五十八條（法規命令無效之	**제158조**（법규명령이 무효가 되

事由及一部無效之處理原則）	는 사유 및 법규명령이 일부 무효인 경우 처리 원칙）
法規命令，有下列情形之一者，無效： 一、牴觸憲法、法律或上級機關之命令者。 二、無法律之授權而剝奪或限制人民之自由、權利者。 三、其訂定依法應經其他機關核准，而未經核准者。	법규명령이 다음 각 관에 해당하는 경우 무효가 된다. 1. 헌법·법률·상급기관의 명령에 저촉하는 내용인 경우 2. 법률에서 인민의 자유·권리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권한을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 3. 법에 따라 거쳐야 하는 다른 기관의 심사·비준을 거치지 아니한 경우
法規命令之一部分無效者，其他部分仍為有效。但除去該無效部分，法規命令顯失規範目的者，全部無效。	법규명령의 일부가 무효인 경우에도 나머지 부분은 여전히 효력이 있다. 다만, 해당 무효인 부분을 제외하고는 법규명령의 제정 목적에 현저하게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규명령 전부를 무효로 한다.
第一百五十九條（行政規則之定義）	**제159조**（행정규칙의 정의）
本法所稱行政規則，係指上級機關對下級機關，或長官對屬	이 법에서 "행정규칙"이란 행정기관의 내부질서 확립 및 운영을

官，依其權限或職權為規範機關內部秩序及運作，所為非直接對外發生法規範效力之一般、抽象之規定。	위하여 상급기관이 하급기관을 규율하거나 행정기관의 장(長)이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을 규율하기 위하여 권한·직권으로 제정하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규정이며, 대외적인 법 규범 효력을 직접적으로는 갖지 아니하는 규정이다.
行政規則包括下列各款之規定： 一、關於機關內部之組織、事務之分配、業務處理方式、人事管理等一般性規定。 二、為協助下級機關或屬官統一解釋法令、認定事實、及行使裁量權，而訂頒之解釋性規定及裁量基準。	행정규칙은 다음 각 관의 규정을 포함한다. 1. 기관 내부의 조직·사무의 배분·업무처리의 방식·인사 관리 등의 일반 규정 2. 하급기관 또는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들이 법령을 일관되게 해석하고 사실을 확인하고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기 위한 해석 관련 규정 및 재량권의 기준
第一百六十條（行政規則之下達與發布） 行政規則應下達下級機關或屬	**제160조**（행정규칙의 전달 및 공포） 행정규칙은 하급기관 또는 해당

官。 行政機關訂定前條第二項第二款之行政規則，應由其首長簽署，並登載於政府公報發布之。	행정기관의 소속 직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행정기관은 159조제2항제2관에 따라 행정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해당 행정규칙의 공포에 대하여 그 행정기관 장(長)의 서명을 받고 공보에 게재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第一百六十一條（行政規則之效力） 有效下達之行政規則，具有拘束訂定機關、其下級機關及屬官之效力。	**제161조**（행정규칙의 효력） 하급기관 또는 소속 직원에게 전달된 행정규칙은 해당 행정규칙을 제정하는 기관·그 하급기관·그 기관의 소속 직원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第一百六十二條（行政規則之廢止） 行政規則得由原發布機關廢止之。 行政規則之廢止，適用第一百六十條規定。	**제162조**（행정규칙의 폐지） 행정규칙은 기존의 행정규칙을 공포한 기관이 폐지할 수 있다. 행정규칙을 폐지하는 경우 제160조 규정을 적용하여 행정규칙을 폐지한다.

第五章 行政計畫	**제5장 행정계획**
第一百六十三條（行政計畫之定義） 本法所稱行政計畫，係指行政機關為將來一定期限內達成特定之目的或實現一定之構想，事前就達成該目的或實現該構想有關之方法、步驟或措施等所為之設計與規劃。	**제163조**（행정계획의 정의） 이 법에서 "행정계획"이란 행정기관이 미래의 일정한 기간 안에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거나 일정한 계획안을 실현하기 위하여 그 달성하려는 목적 또는 실현하려는 계획안에 관련하여 수립한 방법·진행 단계·조치 등의 설계와 계획을 말한다.
第一百六十四條（行政計畫確定程序之適用範圍及程序） 行政計畫有關一定地區土地之特定利用或重大公共設施之設置，涉及多數不同利益之人及多數不同行政機關權限者，確定其計畫之裁決，應經公開及聽證程序，並得有集中事權之效果。	**제164조**（행정계획 결정 절차의 적용 범위 및 절차） 어느 지역의 토지를 특정하게 이용하거나 그 토지에 주요 공공시설을 설치하려는 행정계획이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이해관계인 및 서로 다른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과 관련된 경우 공개적인 청문 절차를 거쳐 그 계획에 대한 재결(裁決)을 받아 해당 행

	정계획에 관한 권한을 종합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前項行政計畫之擬訂、確定、修訂及廢棄之程序，由行政院另定之。	앞 항의 행정계획의 수립·결정·변경·폐지 절차는 행정원이 별도로 정한다.
第六章 行政指導	**제6장 행정지도**
第一百六十五條（行政指導之定義）	**제165조**（행정지도의 정의）
本法所稱行政指導，謂行政機關在其職權或所掌事務範圍內，為實現一定之行政目的，以輔導、協助、勸告、建議或其他不具法律上強制力之方法，促請特定人為一定作為或不作為之行為。	이 법에서 말하는 "행정지도"란 행정기관이 직권이나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일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지도·조언·권고·건의·그 밖에 법적 강제력을 가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특정인에게 어느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행정작용이다.
第一百六十六條（行政指導之原則）	**제166조**（행정지도의 원칙）
行政機關為行政指導時，應注意有關法規規定之目的，不得濫用。	행정기관은 관련 법규가 규정하는 목적에 유의하여 행정지도를 하여야 하고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相對人明確拒絕指導時，行政機關應即停止，並不得據此對相對人為不利之處置。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행정지도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기관은 이를 이유로 그 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즉시 행정지도를 중지하여야 한다.
第一百六十七條（行政指導明示之方法）	**제167조**（행정지도의 방식）
行政機關對相對人為行政指導時，應明示行政指導之目的、內容、及負責指導者等事項。	행정기관은 행정지도를 하는 때에 행정지도의 상대방에게 행정지도의 목적·내용·담당자 등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前項明示，得以書面、言詞或其他方式為之。如相對人請求交付文書時，除行政上有特別困難外，應以書面為之。	앞 항의 내용에 따라 명시하는 사항은 서면·구두·그 밖의 방식으로 작성할 수 있다. 행정지도의 상대방이 그 사항을 적은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행정상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를 서면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第七章 陳情	**제7장 청원**

第一百六十八條（陳情之定義） 人民對於行政興革之建議、行政法令之查詢、行政違失之舉發或行政上權益之維護，得向主管機關陳情。	**제168조**（청원의 정의） 모든 인민은 행정 혁신 및 개혁에 관한 건의·행정 법령에 관한 문의·행정 과오 및 위반에 관한 고발·행정상 권익의 수호를 위하여 주무기관에 청원을 할 수 있다.
第一百六十九條（陳情之方式） 陳情得以書面或言詞為之；其以言詞為之者，受理機關應作成紀錄，並向陳情人朗讀或使閱覽後命其簽名或蓋章。	**제169조**（청원의 방식） 청원은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구두로 청원을 하는 경우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청원인에게 낭독해주거나 청원인이 열람하도록 한 뒤 그가 서명 또는 날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陳情人對紀錄有異議者，應更正之。	청원인이 그 기록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여야 한다.
第一百七十條（陳情案件之處理原則） 行政機關對人民之陳情，應訂定作業規定，指派人員迅速、確	**제170조**（청원사건의 처리 원칙） 행정기관은 인민이 청원을 하는 경우 업무규정을 정하여 담당자를

實處理之。	지명하고 파견하여 이를 신속하고 확실하게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人民之陳情有保密必要者，受理機關處理時，應不予公開。	인민이 제기하는 청원에 관하여 비밀보호가 필요한 경우 이를 접수하는 기관은 처리하는 동안 해당 청원을 공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第一百七十一條（陳情案件之處理方式）	**제171조**（청원사건의 처리 방식）
受理機關認為人民之陳情有理由者，應採取適當之措施；認為無理由者，應通知陳情人，並說明其意旨。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인민이 제기하는 청원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원인에게 해당 기관의 의견을 설명해주어야 한다.
受理機關認為陳情之重要內容不明確或有疑義者，得通知陳情人補陳之。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청원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모호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청원인에게 해당 내용을 보완할 것을 통지할 수 있다.

第一百七十二條（行政機關的告知義務） 人民之陳情應向其他機關為之者，受理機關應告知陳情人。但受理機關認為適當時，應即移送其他機關處理，並通知陳情人。	**제172조**（행정기관의 고지의무）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청원사항이 그 기관이 관장하는 범위 안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청원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이 그 청원을 관장하지는 아니하나 접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접수한 뒤 즉시 청원을 관장하는 기관에 청원서를 이송하고 이를 청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陳情之事項，依法得提起訴願、訴訟或請求國家賠償者，受理機關應告知陳情人。	청원인이 청원하는 사항이 청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에 따라 소원을 제기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거나 국가에 배상을 청구하여야 하는 사항인 경우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은 청원인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
第一百七十三條（對人民陳情案件得不處理之情形） 人民陳情案有下列情形之一	**제173조**（인민의 청원을 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인민이 청원하는 내용이 다음

者，得不予處理： 一、無具體之內容或未具真實姓名或住址者。 二、同一事由，經予適當處理，並已明確答覆後，而仍一再陳情者。 三、非主管陳情內容之機關，接獲陳情人以同一事由分向各機關陳情者。	각 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접수하지 아니한다. 1. 청원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청원인의 성명·주소가 불분명한 경우 2. 이미 기존에 적절하게 처리되어 명확한 답변을 받은 사항에 대하여 같은 이유로 반복하여 청원을 하는 경우 3. 청원을 접수하는 기관이 관장하는 사항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또한 청원인이 같은 사유로 여러 다른 기관에 청원을 하는 경우
第八章 附則	**제8장 부칙**
第一百七十四條（不服行政機關之行政程序行為之救濟方法） 當事人或利害關係人不服行政機關於行政程序中所為之決定或處置，僅得於對實體決定聲明不服時一併聲明之。但行政機關之決定或處置得強制執行或本法或其他法規另有規定者，不在此	**제174조**（행정기관의 행정절차상 행위에 불복하는 경우 구제 방법）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행정기관이 행정절차의 과정에서 하는 결정·조치에 대하여 불복하는 때에는 결정 자체에 대하여 본질적으로 불복하는 경우에만 의견을 표명하도록 한다. 다만, 행정기관

限。	이 결정·조치에 따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경우 또는 이 법이나 다른 법규가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불복해서는 아니 된다.
第一百七十四條之一（職權命令） 本法施行前，行政機關依中央法規標準法第七條訂定之命令，須以法律規定或以法律明列其授權依據者，應於本法施行後二年內，以法律規定或以法律明列其授權依據後修正或訂定；逾期失效。	**제174조의1**（직권 명령） 이 법의 시행 전에 행정기관이 「중앙법규표준법」 제7조에 따라 내린 명령이 법률의 규정이나 법률에서 명시하여 부여하는 권한에 근거하는 경우 이 법의 시행 후 2년 안에 그 근거가 되는 법률의 규정 및 법률에서 부여하는 권한에 관련한 조문을 개정하거나 정정하여야 한다. 이 법의 시행 후 2년이 지나면 해당 명령은 효력을 상실한다.
第一百七十五條（施行日） 本法自中華民國九十年一月一日施行。 本法修正條文自公布日施行。	**제175조**（시행일） 이 법은 중화민국 200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의 개정규정은 그 규정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